붙 임

201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

1. 점검 현황

- 총괄

-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 및 배점

2.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

1 점검지표 현황

□ 총 괄

구 분	점검항목	시 · 도		시 · 군 · 구		비고
		배점	비율(%)	배점	비율(%)	
합 계		330	100	330	100	
1. 개인역량	소 계	25	7.6	25	7.6	
	1-1. 개인역량	25	7.6	25	7.6	
2. 재난관리 부서 역량	소계	130	39.4	130	39.4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58	17.6	55	16.7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72	21.8	75	22.7	
3.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소 계	75	22.7	75	22.7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21	6.4	24	7.3	
	3-2. 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54	16.3	51	15.4	
4. 기관역량	소 계	100	30.3	100	30.3	
	4-1. 기관장 리더십	26	7.9	26	7.9	
	4-2. 행 · 재정적 지원	28	8.5	37	11.2	
	4-3. 교육훈련 개발	12	3.6	12	3.6	
	4-4. 혁신	34	10.3	25	7.6	
5. 가점·감점	소 계	0	0	0	0	
	5-1. 가점	40	12.1	40	12.1	
	5-2. 감점	-40	-12.1	-40	-12.1	

□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 및 배점

구 분		점검항목	배점		비고
			시도	시군구	
총계			330	330	
1. 개인 역량	합계		25	25	
	1-1. 개인 역량	소 계	25	25	
		1-1-1. 재난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	4	4	
		1-1-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실적	9	9	통합
		1-1-3. 재난관련 회의 등 참석 실적	4	4	보완
		1-1-4. 상황전파시스템(Safe-On)활용 훈련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	8	8	보완
2. 재난 관리 부서 역량	합계		130	130	
	2-1. 재난 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소 계	58	55	
		2-1-1.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일정 준수 실적	6	4	
		2-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 실적	6	6	
		2-1-3. 지역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및 세부실행 계획 등 추진실적	4	4	
		2-1-4.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10	10	보완
		2-1-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회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	4	4	
		2-1-6.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5	신규
		2-1-7.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대책 추진실적	3	7	신규
		2-1-8. 가축질병(구제역, 조류인플렌자 등)에 대한 예방 대책 추진실적	7	7	신규
		2-1-9.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기관장 관심도	8	8	신규
		2-1-10.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10		신규
	2-2. 재난 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소 계	72	75	
		2-2-1. 무더위 쉼터 점검 실적	2	2	
		2-2-2. 내진보강사업 대상시설물 관리실적	4	4	보완

		2-2-3.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 및 관리 실적		4	보완
		2-2-4.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전문화 실적	4	4	
		2-2-5.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및 상시운영 독려실적	3	3	보완
		2-2-6. 재난 예·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관 관리 실적		3	
		2-2-7.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실적	3	3	보완
		2-2-8. 신속·효율적인 상황판단회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적	6	6	
		2-2-9. 기상특보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가동 실적	3	3	
		2-2-10.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통한 피해 재발방지 실적	10	10	보완
		2-2-11. 신속한 사전심의 요청을 통한 조기 복구 실적	3	3	
		2-2-12.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4	4	보완
		2-2-13. 재난관리 실태점검 계획 수립 등 추진 실적	7	3	보완
		2-2-14. 재해위험에 민감한 토지이용 규제와 건축조항, 건강 및 안전조항이 모든 개발구역과 건물 유형에 적용된 실적	4	4	
		2-2-15.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폭염·한파제외)	6	6	신규
		2-2-16.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6	6	신규
		2-2-17.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실적	7	7	신규
3.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합계		75	75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소 계	21	24	
		3-1-1.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 감면 홍보 등 실적	3	3	
		3-1-2. 재난경험자 심리안정지원에 따른 재난심리지원 실적	4		
		3-1-3.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적	3	3	
		3-1-4. 내실있는 풍수해 대피 현장훈련 실적		7	통합
		3-1-5.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운영 실적	5	5	
		3-1-6.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6	6	신규
	3-2. 구성원간 상호	소 계	54	51	
		3-2-1. 지역의 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사이에는 방재에 관한 어느정도, 협력관계 실적	4	4	

	협력체계	3-2-2. 태풍북상에 따른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사전통제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실적		4	
		3-2-3. 태풍북상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조기 가동 실적	5	5	
		3-2-4. 태풍북상에 따른 기관장 주재 사전대책회의(예비특보) 개최 및 홍보 실적	6	6	통합
		3-2-5.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4	4	
		3-2-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4	4	보완
		3-2-7.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3	3	
		3-2-8.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네트워크 정례회의를 부기관장 이상 주재한 실적	4		
		3-2-9.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간단체 사전 협조체계 구축 실적	4	4	
		3-2-10.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적	7	7	신규
		3-2-11.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6	3	신규
		3-2-12.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실적	7	7	신규
4. 기관역량	합계		100	100	
	4-1. 기관장리더십	소 계	26	26	
		4-1-1. 풍수해관련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및 홍보실적(태풍·폭염제외)	6	6	통합
		4-1-2. 태풍북상에 따른 재해취약시설·지역에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사전점검 실적(풍수해·폭염 제외)	4	4	통합
		4-1-3. 폭염관련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및 홍보실적(태풍·풍수해제외)	6	6	통합
		4-1-4.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	10	10	
	4-2. 행·재정적지원	소 계	28	37	
		4-2-1. 지역자율방재단 예산확보 실적	5	5	보완
		4-2-2.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예산투자 실적		8	
		4-2-3.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신속한 복구계획 확정·통보 및 예산확보 실적	12	8	
		4-2-4. 지자체가 생태계복구,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 실적	5	5	
		4-2-5.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		5	
		4-2-6.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6	6	

	4-3. 교육 훈련 개발	소 계	12	12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6	6	
		4-3-2.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6	6	
	4-4. 혁신	소 계	34	25	
		4-4-1.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5		
		4-4-2.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실적	15	11	
		4-4-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실적	6	6	
		4-4-4.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손해로부터 주요 공공 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실적	8	8	
5. 가점 ·감점	합계		0	0	
	5-1. 가점	소 계	40	40	
		5-1-1. 재난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 추진실적	7	7	보완
		5-1-2.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 추진 실적	10	10	
		5-1-3. 분야별 재난관리 실태점검 점검결과 우수기관 가점	10	10	보완
		5-1-4. 재난관련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우수기관 가점	13	13	신규
	5-2. 감점	소 계	-40	-40	
		5-2-1.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된 경우 감점	-12	-12	
		5-2-2. 특보 발표기간중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된 겨우 감점	-5	-5	
		5-2-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7조등에 따른 점검결과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 및 업무태만 공무원이 적발된 경우 감점	-8	-8	보완
		5-2-4. 상황전파시스템(Safe-On)훈련메시지 반복 미수신 지자체가 재발방지대책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점	-2	-2	
		5-2-5. 재난관리 실태점검 추진일정 미준수 등 감점	-5	-5	
		5-2-6. 재난관련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미흡한 감점	-8	-8	신규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

1. 개인역량
2. 재난관리부서 역량
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4. 기관역량
5. 가·감점

개인역량 지표별 점검기준

<table>
<tr><td>구 분</td><td>1.개인역량</td><td>1-1.개인역량</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예방관리</td><td>조직운영</td><td>배점</td><td>시도 4, 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1-1-1. 재난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 (정성적 점검)</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재난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 (4점)
- 대상 : 재난발생 시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상태 및 세부적인 업무분장
<table>
<tr><td>구분</td><td>2점</td><td>1.5점</td><td>1점</td><td>0점</td></tr>
<tr><td>업무분장
(2점)</td><td>여</td><td></td><td></td><td></td></tr>
<tr><td>숙지율
(2점)</td><td>100%</td><td>80이상 ~
100%미만</td><td>60% 이상 ~
80% 미만</td><td>60% 미만</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난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 세부적인 업무분장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부서담당자의 재난발생시 개인별 업무분장이 세부적인 경우에 인정
* 특보 발표 등에 따라 재난관련 부서 및 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에 참여하는 자
- 평시 업무와 재난발생 시 업무분장이 구분된 경우 인정
○ 재난발생 시 재난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전숙지상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정성적 점검)
- 재난유형별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의 역할에 대하여 요약정리 상태 및 역할 사전숙지상태 확인</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재난관리부서 담당자 업무분장 사본</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 책임과 임무 사전숙지, 비상체계로 신속대응</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1. 개인역량</td><td>1-1.개인역량</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기타)</td><td>교육훈련</td><td>배점</td><td>시도 9, 시군구 9</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1-1-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6점)
-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 신규 교육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
<table>
<tr><td>구분</td><td>배점 (①)</td><td>이수율 (②)</td><td>점수(채점)[①×②]</td></tr>
<tr><td>산식</td><td>6</td><td></td><td></td></tr>
</table>
* 이수율 : 참석 인원/참석대상 인원
○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점검 실적 (3점)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5">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자체교육 (2점)</td><td colspan="2">추진실적(증빙서류) 점검 회의 (1점)</td></tr>
<tr><td>대상
인원</td><td>참석
인원</td><td>참석률
(①)</td><td>배점
(②)</td><td>점수
(①×②)</td><td>있음</td><td>없음</td></tr>
<tr><td>배점</td><td></td><td></td><td></td><td>2</td><td></td><td>1</td><td>0</td></tr>
</table>
- 참석률 : 참석인원/ 참석대상 인원 (각 지표담당자)</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교육대상은 재난총괄부서, 국민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책임관(CSO), 매뉴얼 주관부서(실무 및 행동), 재난관리 주관부서(재난 및 사고유형별)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관리자 전문교육)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국·과장급) 또는 임원(부장급)으로 관리자 전문교육 받은 경우 인정(3점)
- (실무자 전문교육)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3점)
- (이수기준) 관리자 7시간이상, 실무자 14시간이상 교육의무 이수기준으로 함
√ ‘15년도는 관리자 4시간이상, 실무자 12시간이상(참석교육에 한함)
※ 단. 사이버 교육은 교육의무 이수기준의 50%이내만 실적으로 인정
○ 교육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인정
- 국민안전처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경우 인정
√ 국민안전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기관,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교육기관
- ‘15년도 필수전문교육과정(5개)
<table>
<tr><th>과정명</th><th>대상</th></tr>
<tr><td>재난관리책임자 과정</td><td>지자체 국장</td></tr>
<tr><td>재난안전관리자 과정</td><td>지자체 과장, 공공기관 임원</td></tr>
<tr><td>재난안전리더 과정</td><td>공공기관 부장</td></tr>
<tr><td>재난상황관리자 과정</td><td>재난관리책임기관 상황실장</td></tr>
<tr><td>재난대비훈련전문가 과정</td><td>재난관리책임기관 훈련 담당자</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교육 및 추진실적 점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추진실적 점검은 국장 또는 부단체장이 점검한 경우에 인정
※ 국장 또는 부단체장이 점검할 회의를 과장이 주재한 경우 불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table>
<tr><td rowspan="2">연번</td><td rowspan="2">대상자</td><td colspan="4">교육 참석</td><td rowspan="2">비고</td></tr>
<tr><td>교육기간</td><td>교육장소*</td><td>교육과정명</td><td>이수시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00인 소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산식</td><td></td><td colspan="5">(참석인원/대상인원)×6점</td></tr>
<tr><td>점수</td><td></td><td colspan="5"></td></tr>
</table>
- 교육이수 결과 공문(전자문서) 및 교육확인서 등
○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교육 실적
<table>
<tr><td>교육일시</td><td>대상</td><td>참석</td><td>참석률</td><td>배점</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d></td><td>2</td><td></td></tr>
</table>
- 참석률 : 참석인원/ 참석대상 인원 (각 지표담당자)
- 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사진 등 증빙서류
○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추진사항(증빙서류) 점검 실적
<table>
<tr><td>연번</td><td>점검일시</td><td>대상(명)</td><td>참석(명)</td><td>점검자(점검주재)</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점검계획 및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사진 등 증빙서류</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동법 시행규칙」제6조의2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 통보 : 재난관리총괄과-546(2015.1.29)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1. 개인역량</td><td>1-1.개인역량</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기타)</td><td>교육훈련</td><td>배점</td><td>시도 4, 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1-1-3. (사전분석점검) 재난관련 회의 등 참석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재난관련 회의 등 참석 실적(4점)
<table>
<tr><td>교육별</td><td>참석</td><td>미참석</td></tr>
<tr><td>재난관리 실태점검 설명회</td><td>2</td><td>0</td></tr>
<tr><td>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설명회</td><td>2</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난관련 회의 등 참석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 실태점검 설명회(1.22 담당자)
-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설명회</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재난관련 교육 참석 실적
<table>
<tr><td>연번</td><td>교육별</td><td>참석자</td><td>점수</td><td>비고</td></tr>
<tr><td>1</td><td>재난관리 실태점검 설명회</td><td></td><td></td><td></td></tr>
<tr><td>2</td><td>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설명회</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r>
</table>
- 교육 참석 결과 상시학습인정 등 참석자 명단 통보 공문(전자문서)
- 지자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설명회의 : 재난관리총괄과-114(2015.1.8)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설명회의</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1.개인역량</td><td>1-1.개인역량</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상황관리(대비)</td><td>정보관리</td><td>배점</td><td>시도 8, 시군구 8</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1-1-4. (사전분석점검)상황전파시스템(Safe-On) 활용 훈련메시지 5분 이내 수신</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 (8점)
- 산식* : (5분 이내 수신 횟수/국민안전처 메시지 전파 횟수)
<table>
<tr><td>구분</td><td>배점 (①)</td><td>수신율* (②)</td><td>점수(채점)[①×②]</td></tr>
<tr><td>산식</td><td>8</td><td></td><td></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상황전파시스템 훈련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재난안전상황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체 분석결과
- 월별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수신점검 결과 반영(9월말 까지 실적)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시도, 시군구)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
<table>
<tr><td>메시지 전파횟수</td><td>5분 이내 수신횟수</td><td>수신율</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수신율 = (5분 이내 수신 횟수/국민안전처 메시지 전파 횟수)</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상황총괄담당관실 이세정(02-2100-0223)</td></tr>
</table>

재난관리부서 역량 지표별 점검기준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배점	시도 6, 시군구 4
세부지표	2-1-1.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일정 준수 실적			

측정방법

○(시도, 시군구) '15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실적 (2점)

계획에 반영한 수립대상시설(종)*/시도(시군구) 수립대상시설(종)*×2점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건축물 등 31종 (참고자료 10)

○(시도, 시군구) '15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의 추진일정 준수 실적 (2점)

구분	'14.12.31.까지 수립	'15.1.1~ '15.2.28.까지	'15.3.1.이후 * 미수립 포함
배점	2	1	0

○ (시도) 관할 시군구 '15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독려 실적 (2점) *세종 제외

(관할 시·군·구 내진보강 수립 및 추진일정 준수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4점)×2점

측정기준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시 시·도 대상시설의 계획 반영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15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수립 추진일정 준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 관할 시군구의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 독려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독려 대상 시군이 없어 결측값 2점 인정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
-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및 추진일정 준수 실적

대책 수립(결재) 추진일정 준수 (제출 일자)	수립 실적		점수	
	시도(시군구) 수립대상시설(종)	계획 반영 수립대상시설(종)	수립 실적	추진일정 준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공문(전자문서)

○ (시도) 관할 시군구 내진보강대책 수립 및 추진일정 준수 독려 실적

시군별	점 수	비 고
000시		
000군		
합계		
산식	[(관할 시·군·구 내진보강 수립 실적 및 추진일정 준수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4점]×2점	
점수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채점 집계표 사본

점검근거/자료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대상 시설 및 방법 등)
○ 201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제출 : 지진방재과-47(2014.12.4.)

문 의 처

○ 지진방재과 설재희(02-2100-0665)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배점	시도 6, 시군 6
세부지표	2-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 실적			

측정방법

○ (광역시, 제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 실적 (6점)

구 분	승 인	조건부 승인	승인신청	용역착수	예산확보	미추진
배점	6	4	2	1	0.5	0

○ (도, 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 실적 (6점)

구 분	주민공청회	용역착수	예산확보	계획보고	미추진
배점	6	4	2	1	0

* 군 단위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광역시

○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 실적 (6점) * 자치구 제외

구분	저감사업 추진 실적				계획 수립						
	10% 이상	6-10% 미만	2-6% 미만	2% 미만	공람	승인	조건부 승인	사전 검토	승인 신청	용역 착수	미 착수
배점	6.0	5.0	4.0	3.5	3.0	2.5	2.0	1.5	1.0	0.5	0

측정기준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사항 및 진행상황의 절차 이행단계에 따라 점수 부여

- (도 단위)주민공청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미실시한 경우에는 4점 부여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입찰을 실시 후, 착공계 미제출시 예산확보 해당 점수(광역, 제주 0.5, 도, 광역(부산, 인천, 대구, 울산) 2, 시군 0점) 부여
- **자치구는 풍수해저감종합대책 미수립 대상으로 결측값 6점 인정**
-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재심의” 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저감사업 추진실적은 승인일 이후 총사업비 대비 실적을 말함**

증빙자료

○ (광역시, 제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실적

승인일자	조건부 승인 일자	승인신청 일자	용역기간	확보예산액(억원)	점수

- 승인 공문, 조건부 승인 공문, 승인신청 공문(전자문서), 용역 착수계, 예산서 등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실적

주민공청회 일자	용역착수 일자	예산확보(억원)	계획보고 결재일자	점수

- 주민공청회 자료, 용역착수보고서, 예산서, 계획서(전자문서) 등

<table>
<tr><td></td><td>
○ (시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실적
<table>
<tr><th>공람
일자</th><th>승인
일자</th><th>조건부 승인
일자</th><th>사전검토
일자</th><th>승인 신청
일자</th><th>용역 착수
일자</th><th>점수</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공람, 승인 공문, 조건부 승인 공문, 사전검토 결과통보 공문, 승인신청 공문(전자문서), 용역 착수계 등
○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저감대책 총 사업비 대비 추진 실적 비율(%)
<table>
<tr><th>추진 일자</th><th>건명</th><th>사업비(억원)</th><th>근거</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① 사업실적 합계</td><td>-</td><td></td><td>-</td><td></td></tr>
<tr><td>② 총 사업비(억원)</td><td>-</td><td></td><td>-</td><td></td></tr>
<tr><td>실적비(%)</td><td>-</td><td>(①/②)*100</td><td>-</td><td></td></tr>
<tr><td>점수</td><td></td><td></td><td></td><td></td></tr>
</table>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구조적 · 비구조적 저감대책 총 사업비 확인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구조적 · 비구조적 저감대책 사업 실적 확인
※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 사업별 용역 · 공사 착수여부 확인(착공계 등)
</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td></tr>
<tr><td>문 의 처</td><td>○ 기후변화대책과 나경연(02-2100-0652)</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구조적, 비구조적 대책</td><td>배점</td><td>시도 4, 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1-3.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실행 계획 등 추진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실행 계획 등 추진 실적 (4점)
- 대상 : ① 폭염대비 세부실행 계획 수립
② 폭염대응 관련부서 협력 대응체계 구축(T/F)
③ 폭염상황관리체계 비상연락망 구축
④ 무더위 쉼터(관할 시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시도)·확보(시군구)
⑤ 폭염 특보 시 상황근무 편성
⑥ 폭염 특보 시 상황근무 실시
⑦ 폭염대응 국민행동요령 홍보(홈페이지, 캠페인, 부채·리후렛 등)
<table>
<tr><td>구분</td><td>7종 추진</td><td>6종 추진</td><td>5종 추진</td><td>4종 추진</td><td>3종 이하 추진</td></tr>
<tr><td>배점</td><td>4</td><td>3</td><td>2</td><td>1</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실행 계획 등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실적으로 인정
-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와 동시 홍보 한 경우 불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실행 계획 등 추진 실적
<table>
<tr><td>연번</td><td>일자</td><td>건명</td><td>내용</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 종 추진</td><td></td></tr>
<tr><td>점수</td><td></td><td></td><td></td></tr>
</table>
- 폭염대비 세부실행계획 공문(전자문서),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 특보 시 상황근무편성, 관할 시군구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시군구 자체예산 확보, 행동요령 홍보 실적, 상황근무 대장(서명) 사본</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 폭염대응 종합대책 통보(자연재난대응과-1848, 2015. 5. 25)</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2-2100-0720)</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td><td>구조적, 비구조적 대책</td><td>배점</td><td>시도 10, 시군구 10</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1-4.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구축 사업시행 계획 수립 실적 (2점)
<table>
<tr><td>구분</td><td>수립</td><td>미수립</td></tr>
<tr><td>배점</td><td>2</td><td>0</td></tr>
</table>
○ (시도,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구축 시행 계획 대비 실적 (2점)
- 산식 : [금년실적(사업비)/금년계획(사업비)]
<table>
<tr><td>구분</td><td>배점 (①)</td><td>추진율 (②)</td><td>점수(채점)[①×②]</td></tr>
<tr><td>산식</td><td>3</td><td></td><td></td></tr>
</table>
○ (시도) 관할 시군구 예보·경보시설 설치사업 전년대비 예산투자 및 신규설치 독려 실적 (6점)
<table>
<tr><td>관할 시·군·구 예보·경보시설 설치사업 전년대비 예산투자 및 신규설치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6점×6점</td></tr>
</table>
○ (시군구, 세종) 전년도 대비 예보·경보시설 설치사업 예산 투자 실적 (3점)
- 산식 : (금년도 예산투자(백만원)/전년도 예산투자(백만원))×100(%)
<table>
<tr><td>구 분</td><td>80% 이상</td><td>70~80% 미만</td><td>70% 미만</td><td>50% 미만</td></tr>
<tr><td>배점</td><td>3</td><td>2</td><td>1</td><td>0</td></tr>
</table>
○ (시군구, 세종) 전년도 대비 경보시설 신규 설치 실적 (3점)
- 산식 : [금년도(개소)/전년도(개소)]×100(%)
<table>
<tr><td>구 분</td><td>80% 이상</td><td>70~80% 미만</td><td>70% 미만</td><td>50% 미만</td></tr>
<tr><td>배점</td><td>3</td><td>2</td><td>1</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 계획 수립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시행 계획 대비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시도의 재난 예보·경보체계구축 시행계획 대비 실적은 순수한 시도 발주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함 *시구구 발주사업은 제외
- 시행계획 대비 실적은 금년도 사업비 대비 실적을 말함
- 2015년도 사업계획이 없으면 사업시행 계획 대비 실적은 결측값 2점 인정
※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에 제출
○ 전년도 대비 예보·경보시설 설치사업 예산투자 및 경보시설 신규 설치 실적에</td></tr>
</table>

따라 점수 부여

- 보수 · 보강사업은 신규설치 실적으로 불인정

※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대상
- 자동우량(산간계곡)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계획 수립 일자	추진실적			점수		
	계획(①)	실적(②)	추진율 (②/①)	계획 수립	추진 실적	계

- 재난 예보 · 경보체계구축 사업시행계획서(전자문서), 사업추진 서류(계약, 착공, 준공 등)

○ (시도) 관할 시군구 예보 · 경보시설 설치사업 전년대비 예산투자 및 신규 설치 독려 실적

시군별	예산투자 점수	신규 설치 점수	비 고
000시			
합계			
예산 투자 산식	[(관할 시·군·구 예보 · 경보 설치사업 전년대비 예산투자 및 신규 설치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4점]×4점		
점수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채점 집계표 사본

○ (시군구, 세종) 재난 예보 · 경보시설 예산 투자 및 신규 설치 실적

예산투자(백만원)			신규 설치(개소)			점수		
전년도	금년도	투자율 (%)*	전년도	금년도	설치률 (%)**	예산	신규	계

* 투자율(%) = (금년도 예산투자/전년도 예산투자)/100(%)

** 설치률(%) = [금년도 설치(개소)/전년도 설치(개소)]×100(%)

- 전년도 대비 예 · 경보시설 설치사업 예산투자 및 경보시설 신규 설치 실적 증빙 자료

점검근거 /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 · 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 '15~'19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 자연재난대응과-443(2015.2.9)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김창석(02-2100-0722)

<table>
<tr><td>구 분</td><td>2.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td><td>점검대상기관</td><td colspan="2">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정책방향</td><td>배점</td><td colspan="2">시도 4, 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5">2-1-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5">○ (시도,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4점)
- 대상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중 공사 중인 개발사업
<table>
<tr><td>구 분</td><td>2회</td><td>1회</td><td>미실시</td></tr>
<tr><td>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계획 수립 (2점)</td><td>2점</td><td>1점</td><td>0점</td></tr>
<tr><td>이행실태 점검실시 (2점)</td><td>2점</td><td>1점</td><td>0점</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연 2회)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장 확인하여 점검대상 유무 확인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없으므로 결측값 4점 인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5">○ (시도,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
<table>
<tr><td rowspan="2">연번</td><td rowspan="2">점검 계획 수립 일자</td><td colspan="2">점검 실적</td><td colspan="3">점수</td></tr>
<tr><td>일자</td><td>점검대상(개소)</td><td>수립</td><td>점검</td><td>계</td></tr>
<tr><td></td><td></td><td></td><td></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계획서 및 점검결과 보고서(전자문서)</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5">○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5">○ 기후변화대책과 진경혁(02-2100-0649)</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td><td>점검대상기관</td><td>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정책방향</td><td>배점</td><td>시군구 5</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1-6. (사전분석점검)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군구)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5점)
<table>
<tr><td>구분</td><td>100% 이상</td><td>90～99% 미만</td><td>80～89% 미만</td><td>70～79% 미만</td><td>60～69% 미만</td><td>60% 미만</td></tr>
<tr><td>배점</td><td>5</td><td>4</td><td>3</td><td>2</td><td>1</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시군구별로 매년 자체 수립하는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목표 달성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 산출방식 : 시군구별 피해발생지역 및 기타 피해우려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중 위험요소가 낮은 경우를 제외한 주택 수의 합 (건물 동수 기준)
* 가입목표 달성도(%) =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에서 추출한 주택보험 가입 수 / 지자체에서 제출하여 정한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 수 * 100(%)</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해당 없음
※ 시군구별 자체 설정한 가입촉진대상자 규모를 기준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가입실적(‘15.11.15까지)과 비교하여 달성도 일괄 산출</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재난보험과-70, 2015.1.9.)
○ 풍수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재난보험과 홍성수(02-2100-0793)</td></tr>
</table>

구 분	2. 재난관리부서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배점	시도 3점, 시군구 7점
세부지표	2-1-7.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대책 추진실적 (신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3점)

- 대상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평가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표준매뉴얼(국토부) 연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실적

구 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제정			
	승인완료	승인요청	기관내 검토중	미 작성
배점	3	2	1	0

○ (시군구)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실적 (4점)

- 대상 : 재난위험건축물
- 평가 : 안전관리대책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실적

구 분	대책 수립여부		주민대피계획 수립여부	
	수립	미수립	수립	미수립
배점	2	0	2	0

측정기준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대책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재난위험건축물 : 시설물 안전등급 D급, E급 건축물

※ 주민대피계획에는 임시대피장소 사전 지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재난위험건축물이 없는 시군구는 결측값 4점 인정

증빙자료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실적

구분	매뉴얼명	승인일자	승인신청 일자	기관내 결재일자	점수
시도					
시군구					

- 행동매뉴얼 승인, 승인요청, 제정·정비계획 결재 문서(전자문서)

○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대책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실적

구 분		대책 수립일자	주민대피계획 수립일자	점수
배점	시군구			0

-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대책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보고서(전자문서)

점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문 의 처

○ 사회재난대응과 정구문(02-2100-0733)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역량</td><td>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구조적, 비구조적 대책</td><td>배점</td><td>시도 7점, 시군구 7점</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1-8. 가축질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실적 (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방역대책 수립 및 지원 여부 (2점)
① 이동통제소 설치 예정지 ② 방역 동원장비 지정 ③ 매몰지 사전 확보
④ 살처분·이동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⑤ 전담 가축방역관 및 역학조사반 지정
<table><tr><td>구 분</td><td>5종 이상</td><td>4종 이상</td><td>3종 이상</td><td>2종 이하</td><td>미수립</td></tr><tr><td>배점</td><td>2</td><td>1.5</td><td>1</td><td>0.5</td><td>0</td></tr></table>
○ (시도, 시군구) 축산농장에 대한 예찰활동 실적 (3점)
<table><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3">지역예찰협의회</td><td colspan="4">예찰활동 실적</td></tr><tr><td>구성·운영</td><td>구성</td><td>미구성</td><td>5회 이상</td><td>3회 이상</td><td>1회 이상</td><td>미점검</td></tr><tr><td>배점</td><td>1</td><td>0.5</td><td>0</td><td>2</td><td>1.5</td><td>1</td><td>0</td></tr></table>
○ (시도) 축산농가 및 종사자, 시·군 관계자 대상 예방수칙 등 교육독려 실적 (2점)
(관할 시·군·구 실적 점수의 합 / 관할 시·군·구 수) / 2점 × 2점

○ (시군구) 축산농가 및 종사자, 시·군 관계자 대상 예방수칙 등 교육실적 (2점)
<table><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2">교육계획</td><td colspan="2">교육실시</td></tr><tr><td>수립</td><td>미수립</td><td>실시</td><td>미실시</td></tr><tr><td>배점</td><td>1</td><td>0</td><td>1</td><td>0</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긴급상황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용 준비사항이 포함된 자체방역대책 수립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예찰협의회 구성 여부 및 예찰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 인정
○ 축산농가 및 종사자, 공무원 등 축산 관계자 대상 교육 참여율로 점수 인정
- 가축농가 및 농장이 없는 자치단체는 각 결측값 인정(4점, 3점, 3점)</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자체 방역대책 수립문서(전자문서)
○ 지역예찰협의회 구성·운영 및 축산농장에 대한 예찰활동 결과보고서(단, 결재를 받아야 인정)
○ 교육계획 및 실적보고서(전자문서)
- 교육 참석자 서명부 포함</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가축질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사회재난대응과 장규식(02-2100-0731)</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구조적, 비구조적 대책</td><td>배점</td><td>시도 8, 시군구 8</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1-9.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기관장 관심도 (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충실도(5점)
- 13개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table>
<tr><td rowspan="3">구분</td><td colspan="5">수립</td><td rowspan="3">미수립</td></tr>
<tr><td colspan="2">우수</td><td colspan="2">보통</td><td rowspan="2">미흡</td></tr>
<tr><td>의견수렴</td><td>자체작성</td><td>의견수렴</td><td>자체작성</td></tr>
<tr><td>배점</td><td>5</td><td>4</td><td>3</td><td>2</td><td>1</td><td>0</td></tr>
</table>
○ (시도, 시군구)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3점)
<table>
<tr><td>구분</td><td>기관장 결재</td><td>부기관장 결재</td><td>수립</td><td>미수립</td></tr>
<tr><td>배점</td><td>3</td><td>2</td><td>1</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수립 및 충실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우수 : 기관내 부서별 및 필요한 타 협조기관이 포함된 활동계획 수립
- 보통 : 기관내 부서별 및 일부 필요한 타 협조기관이 포함된 활동계획 수립
- 미흡 : 기관내 부서별 활동계획만 수립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서(전자문서)
- 관련 부서 및 타 협조기관 대상 회의개최 서류
- 의견수렴 및 반영사항 등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서의 공유
- 관련 부서 및 타 협조기관에 통보</td></tr>
<tr><td>평가근거/자료</td><td colspan="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 · 활용)③</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사회재난대응과 박정곤(02-2100-0732)</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수립</td><td>평 가
대상기관</td><td colspan="2">시 · 도</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td><td>계획수립</td><td>배점</td><td colspan="2">시 · 도 10</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5">2-1-10. (사전분석점검) 시 · 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5">① 시 · 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정성평가, 5점)
<table><tr><td>구분</td><td>상위기관(5개 시·도)</td><td>중위기관(7개 시·도)</td><td>하위기관(5개 시·도)</td></tr><tr><td>배점</td><td>5점</td><td>2점</td><td>1점</td></tr></table>② 시 · 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일정 준수(3점)
<table><tr><td>구분</td><td>기한내 수립</td><td>1개월 이내</td><td>1개월 초과</td></tr><tr><td>배점</td><td>3점</td><td>2점</td><td>1점</td></tr></table>* 수립기한 : 4.30
③ 시 · 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여부 (2점)
<table><tr><td>구분</td><td>안전관리위원회 개최</td><td>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td></tr><tr><td>배점</td><td>2점</td><td>0점</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5">① 기본계획(안전혁신 마스터플랜포함) · 집행계획 및 개별계획간 연계성,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 포함 여부 등 계획의 적정성
② 안전관리계획 기한내 수립 여부(4.30)
③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여부</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5">① 시 · 도(시 · 군 · 구) 안전관리계획(전자문서, 첨부물 파일로 제출)
② 시 · 도(시 · 군 ·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table><tr><td>연번</td><td>기관명</td><td>문서 제목</td><td>수립일자</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③ 시 · 도(시 · 군 · 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문서
<table><tr><td>연번</td><td>기관명</td><td>문서 제목</td><td>개최일시</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전자문서, 첨부물 파일로 제출</td></tr>
<tr><td>평가근거
/자료</td><td colspan="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1호</td></tr>
<tr><td>문의처</td><td colspan="5">○ 국민안전처 안전사업조정과 박용욱 사무관(02-2100-0450)</td></tr>
</table>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조사 분석	배점	시도 2, 시군구 2
세부지표	2-2-1. 무더위 쉼터 점검 실적			

측정방법

○ (시도) 관할 시군구 무더위 쉼터 표본점검 실적 (2점)

- 산식 : [무더위 쉼터 표본점검 (개소)/무더위 쉼터 점검대상 (개소)]×100(%)

구분	10% 이상	7~10% 미만	4~7% 미만	1~4% 미만	1% 미만
배점	2	1.5	1.0	0.5	0

○ (시군구, 세종) 무더위 쉼터 점검 실적 (2점)

- 산식* :[무더위 쉼터 점검 (개소)/무더위 쉼터 점검대상 (개소)]

구분	배점 (①)	점검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측정기준

○ 무더위 쉼터 점검(시도는 표본점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검결과 보고는 점검시기에 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예, 7~10월 결재)
- (시도) 시군구와 별도로 시군구 무더위 쉼터 표본 점검한 경우 인정

증빙자료

○ (시도) 무더위 쉼터 표본점검 실적

시군별	점검대상 (개소)	표본점검 (개소)	비 고
000시			
000군			
합계			
산식	[무더위 쉼터 표본점검 (개소)/무더위 쉼터 점검대상 (개소)]×100(%)		
점수			

- 무더위 쉼터 표본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여비지출결의서(사본)

○ (시군구, 세종) 무더위 쉼터 점검 실적

읍면동별	점검대상 (개소)	점검 실시 (개소)	비 고
000읍			
000면			
합계			
산식	[무더위 쉼터 점검 (개소)/무더위 쉼터 점검대상 (개소)]		
점수			

- 무더위 쉼터 일제 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점검근거/자료

○ 2015 폭염대응 종합대책 통보(자연재난대응과-1848, 2015. 5. 25)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2-2100-0720)

<table>
<tr><td>구 분</td><td>2.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조사 분석</td><td>배점</td><td>시도 4, 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2. 내진보강사업 대상 시설물 관리 철저</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내진보강대상시설물 전수조사 제출 일정 준수 (2점)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시도</td><td>시군구
(시도로제출)</td><td>시도</td><td>시군구
(시도로제출)</td><td>시도</td><td>시군구
(시도로제출)</td></tr>
<tr><td>‘15.10.21 까지 제출</td><td>‘15.10.15. 까지 제출</td><td>′15.10.22. ~ ′15.10.26. 까지</td><td>′15.10.16. ~ ′15.10.20. 까지</td><td>′15.10.26. 이후
* 미제출 포함</td><td>′15.10.21. 이후
* 미제출 포함</td></tr>
<tr><td>배점</td><td colspan="2">2</td><td colspan="2">1</td><td colspan="2">0</td></tr>
</table>
○ (시도, 시군구) 내진보강 추진상황 공시자료 제출 일정 준수 실적 (2점)
<table>
<tr><td>구분</td><td>‘15.2.28.까지 제출</td><td>′15.3.1.~′15.3.31.까지</td><td>′15.4.1.이후
* 미제출 포함</td></tr>
<tr><td>배점</td><td>2</td><td>1</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내진보강내상시설물 전수조사 제출일정에 따라 점수 부여
※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아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 내진보강 추진상황 공시자료 제출일정 준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내진보강대상시설물 전수조사 제출일정에 따라 점수 부여
<table>
<tr><td>제출일자</td><td>건명</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r>
</table>
- 전수조사서 제출 공문(전자문서)(공문만 첨부하고, 첨부물 불요)
○ (시도, 시군구) 내진보강 추진상황 공시자료 제출일정 준수 실적
<table>
<tr><td>제출일자</td><td>건명</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r>
</table>
- 내진보강 추진상황 제출 공문(전자문서)(공문만 첨부하고, 첨부물 불요)</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
○ 2014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를 위한 실적자료 제출
-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255(2015.1.20.)</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지진방재과 설재희(02-2100-0665)</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조사 분석</td><td>배점</td><td>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3.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 및 관리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기관장 보고(결재) 실적 (2점)
<table><tr><td>구분</td><td>조사계획 수립 (1점)</td><td>조사결과 기관장 보고(결재) (1점)</td></tr><tr><td>배점</td><td>수립 1, 미수립 0</td><td>기관장 결재 1, 기관장 미결재 0</td></tr></table>○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NDMS 입력 실적 (2점)
- 산식* : (NDMS 입력 수/우려지역 수)
<table><tr><td>구분</td><td>배점 (①)</td><td>입력율* (②)</td><td>점수(채점)[①×②]</td></tr><tr><td>산식</td><td>2</td><td></td><td></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기관장 보고 실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3(2015.3.12.)호,재난경감과-1947(2015.5.7.)호, 재난경감과-2856(2015.6.30.)호에 따라 수립한 자체조사계획에 따라 점수 부여
- 조사결과를 기관장 결재(전자문서)하지 않고, 부기관장이하 결재한 경우 불인정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제출되어 확정된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3(2015.3.12.))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출된 지역의 입력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일제조사 결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NDMS 입력 실적은 결측값 2점 인정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에서 반올림</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군구) 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 기관장 보고 실적
<table><tr><td rowspan="2">조사계획 수립 일자</td><td rowspan="2">조사결과 결재자</td><td colspan="3">점수</td></tr><tr><td>계획 수립</td><td>조사결과 결재</td><td>계</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계획 및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 (시군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NDMS 입력 실적
<table><tr><td>우려지역 수</td><td>입력 수</td><td>입력율</td><td>점수</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입력율 =(NDMS 입력 수/우려지역 수)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사항 출력물
※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 (참고 6)</td></tr>
<tr><td>점검근거/자료</td><td colspan="4">○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3(2015.3.12.)</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자연재난대응과 신명수(02-2100-0719)</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조직운영</td><td>배점</td><td>시도 4, 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4.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전문화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전문화 실적 (4점)
- 대상 : 재난관리 업무 담당계장 및 담당자
- 조직 정비 및 인사발령 대상 : ① 방재안전직렬 조직반영
② 방재안전직렬 계장 인사발령
③ 방재안전직렬 담당자 인사발령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4">방재안전직렬 조직정비 및 인사발령 (2점)</td><td colspan="4">재난관리 실태점검 업무담당자 근무기간 (2점)</td></tr>
<tr><td>3종 이상 추진</td><td>2종 이상 추진</td><td>1종 이상 추진</td><td>미 추진</td><td>구분</td><td>2년 이상</td><td>1년 이상</td><td>1년 미만</td></tr>
<tr><td rowspan="2">배점</td><td rowspan="2">2</td><td rowspan="2">1.5</td><td rowspan="2">1</td><td rowspan="2">0</td><td>계장</td><td>1</td><td>0.6</td><td>0.2</td></tr>
<tr><td>담당자</td><td>1</td><td>0.6</td><td>0.2</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방재안전직렬 조직정비·인사발령 및 재난관리 실태점검 업무담당자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 실태점검 업무담당자(계장, 담당자)의 근무기간은 점검기준일(10.15)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인정
※ 업무를 담당하다 다른 업무담당 후 다시 재난관리 실태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재안전직렬 조직정비 및 인사발령 실적
<table>
<tr><td>연번</td><td>정비/인사 발령 일자</td><td>부서명</td><td>인사발령자</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종 추진</td><td></td><td></td></tr>
<tr><td>점수</td><td></td><td></td><td></td><td></td></tr>
</table>
- 방재안전직렬 직제개정 사본 및 인사발령 공문(전자문서)
- 방재안전직렬 채용에 따른 조직 및 인사부서 협의문서(전자문서)
○ (시도, 시군구)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실태점검 업무담당자 근무 실적
<table>
<tr><td>연번</td><td>직급(직위)</td><td>성명</td><td>근무기간</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개인별 업무분장 공문 사본(전자문서)</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 및 설명회의 개최 통보
- (재난관리총괄과-546, 2015.1.30)</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조직운영</td><td>배점</td><td>시도 3, 시군구 3</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5.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및 상시운영 독려 실적 (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① (시군구, 제주, 세종)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여부 (3점)
<table><tr><td>구분</td><td>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td><td>상시운영</td></tr><tr><td>배점</td><td>1</td><td>3</td></tr></table>② (시도) 관할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 독려 실적 (3점)
(∑관할 시군구별 ①에 따른 취득점수) / (관할 시군구 수)</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점수 부여
- 상시운영 : 교대근무자가 24시간 상황실에서 전담근무
※ 야간, 공휴일 당직자 대체 등은 상시 미운영에 해당
-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
①당직근무와 별개로 상황근무 명령을 통해 상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②예외적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 당직실 활용 시 재난 부서 직원 1인 이상을 당직자로 편성하여 상황근무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등</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군구, 제주, 세종)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현황
- 상시운영 근무실적(야간,휴일 포함) 증빙
-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명시적 근거, 근무실적 증빙
* 내부 당직규정, 상황관리규정 명시 근거 등 제출
- 12월 이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 또는 상시운영에 준하는 계획 중인 경우 추진계획서 사본(부단체장 이상 결재본)
<table><tr><td>시군</td><td>상시운영</td><td>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시도)관할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 독려 실적(세종제주 제외)
<table><tr><td>구 분</td><td>점 수</td><td>비 고</td></tr><tr><td>00시</td><td></td><td></td></tr><tr><td>00군</td><td></td><td></td></tr><tr><td>합 계</td><td></td><td></td></tr><tr><td>산 식</td><td colspan="2">(∑관할 시군구별 측정방법①에 따른 취득점수) / (관할 시군구 수)</td></tr><tr><td>최종점수</td><td colspan="2"></td></tr></table></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동법 시행령」제23조</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상황총괄담당관실 우명제(02-2100-0226)</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운영연속성관리</td><td>배점</td><td>시군구 3</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6.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적 (1점)
<table><tr><td>구분</td><td>실시</td><td>미실시</td></tr><tr><td>배점</td><td>1</td><td>0</td></tr></table>* 재난예·경보시설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라디오재난경보방송(RDS), 재난문자방송서비스(춘), DMB재난방송송출시스템 등
○ (시군구) 운영매뉴얼 비치,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기록유지 실적 (1점)
- 대상 : 운영매뉴얼 비치,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대상 기록유지
<table><tr><td>구분</td><td>3종 실시</td><td>2종 실시</td><td>1종 실시</td><td>미실시</td></tr><tr><td>배점</td><td>1</td><td>0.7</td><td>0.3</td><td>0</td></tr></table>○ (시군구) 시도재난관리시스템 내 CCTV 및 관측장비 등록 여부 (1점)
<table><tr><td>구분</td><td>등록</td><td>미등록</td></tr><tr><td>배점</td><td>1</td><td>0</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운영매뉴얼 비치, 운영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기록유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재난관리시스템 자원정보 시설관리 내 CCTV, 관측장비 최신 업데이트 여부</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 실적
<table><tr><td rowspan="2">정기점검일자</td><td rowspan="2">매뉴얼 비치 여부</td><td rowspan="2">책임자 지정 여부</td><td rowspan="2">기록유지 여부</td><td rowspan="2">장비등록</td><td colspan="6">점수</td></tr><tr><td>점검</td><td>매뉴얼</td><td>책임자</td><td>기록유지</td><td>장비등록</td><td>계</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재난예보·경보시설 정기점검 계획서 및 점검결과 보고서(전자문서), 운영매뉴얼 비치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 사항</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 2015년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지침 : 자연재난대응과-1056(2015.3.31.)</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자연재난대응과 김창석(02-2100-07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재난관리 물적 · 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구조적, 비구조적 대책</td><td>배점</td><td>시도 3, 시군구 3</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7.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실적 (3점)
- 대상 :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14.11.15. 이후부터 적용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신청 (1점)</td><td colspan="3">발급 (2점)</td></tr>
<tr><td>2건 이상</td><td>미신청</td><td>3건 이상</td><td>2건 이하</td><td>실적 없음</td></tr>
<tr><td>배점</td><td>1</td><td>0</td><td>2</td><td>1</td><td>0</td></tr>
</table>
* 평가일 현재 건수(시군구는 시도 신청건수 및 시도에서 발급받은 건수, 시도는 국민안전처에 신청한 건수 및 발급받은 건수 포함</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신청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조건 불충분으로 반려 또는 검토 중 실적 인정
* 신청 접수문서 첨부한 경우 인정
○ 지진 안전성 표시제 발급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인받은 실적
* 상급기관이 아닌 자체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발급한 실적은 불인정
- 상급기관 확인서 첨부한 경우 인정
-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인받은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진 안전성 : 건축물이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
※ 확인기관 : 지진 안전성 표시제의 신청접수 ·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시·도 : 시·군·구 소유 건축물, 시·도 산하기관 소유 건축물
- 국민안전처 : 시·도 소유 건축물</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시도, 시군구)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신청 실적
<table>
<tr><td>연번</td><td>신청일자</td><td>대상시설물</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공문 사본
○(시도, 시군구) 지진안전성 표시제 발급 실적
<table>
<tr><td>연번</td><td>발급일자</td><td>대상시설물</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사본</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시행알림 - 지진방재과-4583(2014.11.18)</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지진방재과 최사라(02-2100-0657)</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상황관리(대비)</td><td>정보관리</td><td>배점</td><td>시도 6, 시군구 6</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8. 신속·효율적인 상황판단회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운영 계획 수립 실적 (2점)
<table>
<tr><td>구분</td><td>5.14일 이전 수립</td><td>5.15일 이후 수립</td><td>5.20일 이후 수립</td><td>5.30일 이후 수립</td><td>미수립</td></tr>
<tr><td>배점</td><td>2</td><td>1.5</td><td>1</td><td>0.5</td><td>0</td></tr>
</table>
○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4점)
- 산식 : (상황판단회의 개최 횟수/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횟수)
- 대상 : 지대본 운영된 사회재난 및 풍수해(호우, 태풍, 대설 등)
- 기간 : 풍수해(전년도 12.1~3.15, 5.15~10.15), 사회재난 업무(1.1~10.15)
※ 겨울철·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table>
<tr><td>구분</td><td>배점 (①)</td><td>개최율 (②)</td><td>점수(채점)[①×②]</td></tr>
<tr><td>산식</td><td>4</td><td></td><td></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수립 시기에 따라 점수 부여
○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계획횟수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에 따라 실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횟수
※ 시도 및 시군구 점검 시 상황판단 운영계획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값 4점 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수립 실적
<table>
<tr><td>수립 일자</td><td>건명</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r>
</table>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수립 공문(전자문서)
○ (시도, 시군구) 상황판단회의 운영 실적
<table>
<tr><td>연번</td><td>특보발표 일시</td><td>특보구분*</td><td>발표지역</td><td>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td><td>비 고</td></tr>
<tr><td></td><td></td><td></td><td>000시</td><td></td><td></td></tr>
<tr><td></td><td></td><td></td><td>0000군</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회</td><td></td><td></td><td></td></tr>
<tr><td>산식</td><td></td><td colspan="4">(상황판단회의 개최 횟수/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횟수)</td></tr>
<tr><td>점수</td><td></td><td colspan="4"></td></tr>
</table>
- [계획]2015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대비 행동매뉴얼 또는 별도 운영계획 보고서(전자문서)
- [실적]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서(전자문서, 메모보고), 상황판단회의 자료 등
※ 공정한 점검을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지역 국민안전처 제공 (참고 3)</td></tr>
<tr><td>점검근거/자료</td><td colspan="4">○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3(2015.3.12.)</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자연재난대응과 신명수(02-2100-0719)</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상황관리(대비)</td><td>정보관리</td><td>배점</td><td>시도 3, 시군구 3</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9. (사전분석점검) 기상특보 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 가동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관할 시군구 기상특보 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 가동 독려 실적(3점)
관할 시·군·구 기상특보 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 가동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3점×3점
○ (시군구, 세종) 기상특보 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가동 실적(3점)
<table><tr><td>구분</td><td>70% 이상</td><td>50～70% 미만</td><td>30～50% 미만</td><td>20～30% 미만</td><td>20% 미만</td></tr><tr><td>배점</td><td>3</td><td>2</td><td>1</td><td>0.5</td><td>0</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기상특보 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 가동 (시도는 독려)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상황전파메신저에서 재해명이 생성된 기상특보를 말함
○ 대상 : 특보 발표에 따라 재해명이 생성된 재해의 17개 분야 SOP 입력 상황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 서비스총괄, 인명피해, 의료, 방역, 쓰레기, 상수도, 산사태, 지방도, 시군도, 지방하천, 소하천,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농촌, 소교량, 도시배수펌프장 등</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국민안전처(자연재난대응과)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시도)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 가동 독려 실적
<table><tr><td>시군구별</td><td>점수</td><td>비고</td></tr><tr><td></td><td></td><td></td></tr><tr><td>합계</td><td></td><td></td></tr><tr><td>산식</td><td colspan="2">[(관할 시·군·구 기상특보 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 가동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3점]×3점</td></tr><tr><td>점수</td><td colspan="2"></td></tr></table>○ (시군구, 세종)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 가동 실적
<table><tr><td>일시</td><td>호우·태풍·대설 등</td><td>SOP가동 (분야)</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r><tr><td>합계</td><td></td><td></td><td></td></tr><tr><td>산식</td><td colspan="3">(SOP가동합계/호우·태풍횟수)×100(%)</td></tr><tr><td>점수</td><td colspan="3"></td></tr></table></td></tr>
<tr><td>점검근거/자료</td><td colspan="4">○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3(2015.3.12.)</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자연재난대응과 신명수(02-2100-0719)</td></tr>
</table>

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복구)	복구사업 추진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2-2-10. (사전분석점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통한 피해 재발방지 실적			

측정방법

○ (시도,시군구) 복구계획 중앙(시도) 확정·통보일로부터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소요된 기간(확정 복구비 1억이상) (3점)

구 분	10일 이내 100% 발주	12일 이내 100% 발주	14일 이내 100% 발주	100% 발주에 15일 이상 소요
배점	3	2	1	0

○ (시도, 시군구) 복구계획 중앙(시도) 확정·통보일로부터 공사 발주에 소요된 기간(확정 복구비 1억이상) (2점)

- 4개월 이내 발주 실적

구분	배점 (①)	비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 (시도, 시군구) 재해복구사업 발주 시 긴급입찰 실적(확정 복구비 1억이상) (2점)

구분	배점 (①)	비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 (시도, 시군구) 1억 이상 재해복구사업 피해발생 다음해 6월 이전 완료 실적 (3점)

구분	배점 (①)	비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3		

측정기준

○ 재해복구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80% 이상 지출되었거나, 주요공정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사업으로 인정, 수용재결신청서, 보상협의서(기공승락서 포함)
  √ 수용재결 신청된 경우 보상협의 완료된 것으로 인정
- 재해복구는 해당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 지자체만 점검, 미해당 지자체는 결측값 인정
- 관할 시군구가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에 해당되나 시도발주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경우 결측값 10점 인정
- 실적은 대상규모이상 건수에 대한 이행 실적을 말함

○ 복구사업은 2014년도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으로 지정된 수해복구사업임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실시설계용역, 공사발주, 긴급입찰, 완료 실적

실시설계 발주 소요기간				공사발주에 소요된 기간(4개월 이내)			
대상(건)	발주완료일		점수	대상(건)	발주(건) (4개월 이내)	비율	점수
긴급일찰 실시 실적				익년 6월 이전 완료 실적			
대상(건)	입찰(건)	비율	점수	대상(건)	완료(건)	비율	점수

※ 실시설계 발주 소요기간 발주완료(10일이내, 12일이내, 14일이내, 15일이상 중 완료일 작성)
※ 비율=(발주, 입찰, 완료/대상)
-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공문(전자문서), 공사 발주 공문, 긴급입찰 공고문,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 등
- 긴급입찰 실적외 자료는 NDMS 재난관리시스템 복구관리에 입력된 자료 활용 점검

점검근거/자료

○ 2014 재해복구 추진지침

문 의 처

○ 복구총괄과 이광윤(02-2100-0772)

<table>
<tr><td>구 분</td><td>2.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상황관리(복구)</td><td>복구사업 추진</td><td>배점</td><td>시도 3, 시군구 3</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11. (사전분석점검) 신속한 사전심의 요청을 통한 조기 복구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한 실적 (3점)
- 산식 : [기간 내 심의(건)/용역 숫자(건)]
<table>
<tr><td>구분</td><td>배점 (①)</td><td>기간 내 심의율* (②)</td><td>점수(채점)[①×②]</td></tr>
<tr><td>산식</td><td>3</td><td></td><td></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 기간 내 실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 관할 시군구가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에 해당되나 시도 발주 재해복구 사업이 없는 경우 결측값 3점 인정
- 재해복구사업이 없는 지자체는 결측값 3점 인정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실적은 대상규모이상 건수에 대한 이행한 실적을 말함

○ 복구사업은 2014년도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으로 지정된 수해복구사업

※ 사전심의 신청 시기
- 용역기간 30일 이내(준공일 이전), 용역기간 31~45일(준공 10일 이전), 용역기간 46~60일(준공 20일 이전), 용역기간 61일 이상(준공 30일 이전), Turn-key(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한 실적
<table>
<tr><td>용역명</td><td>총 용역일</td><td>용역기간 (착수일-준공일)</td><td>산전심의 신청일시</td><td>기간 내 심의 여부</td></tr>
<tr><td>0000</td><td>30일</td><td>‘15.1.1~3.31</td><td>‘15.2.25</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 colspan="4">총 00건(용역건수), 00건(기간 내 심의 건수)</td></tr>
<tr><td>산식*</td><td colspan="4">[기간 내 심의(건)/용역 숫자(건)]</td></tr>
<tr><td>점수</td><td colspan="4"></td></tr>
</table>
-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 및 사전심의 요청 공문(전자문서)</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4 재해복구 추진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복구총괄과 이광윤(02-2100-0772)</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기타)</td><td>재난행정</td><td>배점</td><td>시도 4, 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12.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2점)
- 대상 : 근평 시 가점, 전보 시 선택권, 해외연수, 특별휴가, 시간외 수당 개선, 자체 표창 등
<table><tr><td>구분</td><td>4종 이상 실시</td><td>3종 실시</td><td>2종 실시</td><td>1종 실시</td><td>미실시</td></tr><tr><td>배점</td><td>2</td><td>1.5</td><td>1</td><td>0.5</td><td>0</td></tr></table>○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인원증원 실적(2점)
<table><tr><td>구 분</td><td>3명</td><td>2명</td><td>1명</td><td>실적 없음</td></tr><tr><td>배 점</td><td>2점</td><td>1.5점</td><td>1점</td><td>0점</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부서 : 재난 업무 담당자 및 담당 계장, 과장
- 근무평정 시 가점의 경우 가점항목에 명시되어 실제 반영된 경우 인정
(예, 재난부서 근무자 1개월 0.02점, 최고 1점)
√ 격무, 기피부서 가점부여 조건 및 기준 명시되어 실제 반영된 경우 인정
√ 인사운영계획 가점항목에 명시되어 실제 반영된 경우 인정
※ 종합상황실 근무자 실적가점 부여 건의는 불인정
- 해외연수의 해외배낭 연수는 인정되나, 국내연수는 불인정
- 특별휴가의 수방유공자 특별휴가 등 인정
- 재난업무 비상근무의 시간외근무수당 개선 시 인정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기여자 인센티브 불인정
- 재난관리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 자체 표창한 경우 인정
- 재난관리와 관계없는 을지연습 포상은 불인정
○ 기타 인정할 사항은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결정
- 점검결과 점수표 비고란에 “인정내용”기재</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table><tr><td>연번</td><td>일자</td><td>건명</td><td>내용</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합계</td><td></td><td>○ 종 부여</td><td></td><td></td></tr><tr><td>점수</td><td></td><td></td><td colspan="2"></td></tr></table>- 관련계획서(전자문서) 및 실적자료 등</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기타)</td><td>재난점검</td><td>배점</td><td>시도 7, 시군구 3</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13. 재난관리 실태점검 계획 수립 등 추진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시도) 2015 재난관리 실태점검계획 수립 및 시군구 현장점검 실적 (4점)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계획수립 (2점)</td><td colspan="3">현장점검 (2점)</td></tr>
<tr><td>기관장결재</td><td>국장급 이상 결재</td><td>배점
(①)</td><td>점검율
(②)</td><td>점수(채점)
[①×②]</td></tr>
<tr><td>배점</td><td>2</td><td>1</td><td>2</td><td></td><td></td></tr>
</table>
- 점검율 : 현장점검 시군 수/점검대상 시군구 수
○ (시도, 시군구) 자체 및 시군구 점검시 외부전문가 참여, 인센티브 실시 실적 (3점)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4">외부전문가 참여 (2점)</td><td colspan="2">인센티브실시(표창) (1점)</td></tr>
<tr><td>4명</td><td>3명</td><td>2명</td><td>1명</td><td>실시</td><td>미실시</td></tr>
<tr><td>배점</td><td>2</td><td>1.5</td><td>1.0</td><td>0.5</td><td>1</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자체 및 시도의 시군구 현장점검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인원에 따라 점수 부여
- 외부 전문가 : 재난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 동일인이 시도 자체점검과 시군구 현지 점검에 참여 한 경우 1인으로 인정
○ 계획수립, 인센티브(표창)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는 시군구 및 자체점검 계획, 시군구는 자체점검계획을 말함
- 국민안전처에서 수여하는 포상·표창의 경우 불인정
- 세종·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장 점검대상 시군구가 없어 결측값 2점 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 실적
- 재난관리 실태점검 계획(전자문서), 표창 사본
○ (시도) 현장점검 실적
<table>
<tr><td>대상 시군구수</td><td>현장점검 시군구수</td><td>점검율*</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점검율 = (현장점검 시군구 수/ 점검대상 시군구 수)</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정책방향</td><td>배점</td><td>시도 4, 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14. 재해 위험에 민감한 토지 이용 규제와 건축조항, 건강 및 안전 조항이 모든 개발구역과 건물 유형에 적용된 실적 (UN ISDR 캠페인 지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군구, 세종·제주) 재해 위험에 민감한 토지 이용 규제와 건축조항, 건강 및 안전 조항이 모든 개발구역과 건물 유형에 적용된 실적 (4점)
①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② 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
③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지침 제정
④ 방재지구·급경사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실시
⑤ 방재지구·급경사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협의 실시
⑥ 방재지구·급경사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건축·토질형질변경 허가 협의 실시
<table><tr><td>구분</td><td>4종 이상 추진</td><td>3종 추진</td><td>2종 추진</td><td>1종 이하 추진</td></tr><tr><td>배점</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 (시도) 관할 시군구 토지 및 건축규제 관련 추진 독려 실적 (4점)
관할 시·군·구 토지 및 건축규제 추진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4점×4점</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해에 민감한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규제 제정 및 협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정 등 제정은 불인정하고,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조례제정(시장·군수·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5조)
- ①~③만 이행하고, 협의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값 1점 인정,
※ 건축허가(신고) 대장 및 개발행위(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장 확인하여 협의대상 유무 확인
○ (시도) 관할 시군구 토지 및 건축규제 추진 독려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군구, 세종·제주) 토지 및 건축규제 추진 실적
<table><tr><td>연번</td><td>일시</td><td>건 명</td><td>주요제한 내용</td><td>점수</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건축 및 토지 규제관련 제정 및 협의 관련 서류(전자문서 등)
○ (시도) 토지 및 건축규제 추진 독려 실적
<table><tr><td>시군구별</td><td>점수</td><td>비고</td></tr><tr><td></td><td></td><td></td></tr><tr><td>합계</td><td></td><td></td></tr><tr><td>산식</td><td colspan="2">[(관할 시·군·구 토지 및 건축규제 추진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4점]×4점</td></tr><tr><td>점수</td><td colspan="2"></td></tr></table>-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채점 집계표 사본</td></tr>
<tr><td>점검근거/자료</td><td colspan="4">○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진단항목(6-1)</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재난관리총괄과 한진택(02-2100-0678)</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 재난관리 물적 · 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구조적, 비구조적 대책</td><td>배점</td><td>시도 6점, 시군구 6점</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15.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폭염, 한파 제외) (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의 종합 안전관리대책 계획 수립 (3점) (폭염, 한파 제외)
①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분포 현황 파악 여부(조사 실적)
②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식별 여부
③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④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수립 여부
⑤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수립 여부
<table><tr><td>구 분</td><td>5종</td><td>4종</td><td>3종</td><td>2종</td><td>1종</td><td>미 수립</td></tr><tr><td>배점</td><td>3</td><td>2.5</td><td>2</td><td>1.5</td><td>1</td><td>0</td></tr></table>
○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3점)
※ 시설물 설치, 확충, 개선 등과 같은 구조적 추진실적의 경우 (추진실적 × 2건)
교육, 홍보, 지원 등은 비구조적 추진실적
<table><tr><td>구분</td><td>5건 이상</td><td>3건 이상</td><td>1건 이상</td><td>없음</td></tr><tr><td>배점</td><td>3점</td><td>2점</td><td>1점</td><td>0점</td></tr></table>
○ (시도, 시군구) 최근 3년간 연평균 안전개선사업 예산투자 실적(3점)
- 산식 : [위해요소(위험요인)제거사업(억원)/보통세(억원)] × 100(%)
<table><tr><td>구 분</td><td>4.5% 이상</td><td>3.5~4.5% 미만</td><td>2.5~3.5% 미만</td><td>1.5~3.5% 미만</td><td>1.5% 미만</td></tr><tr><td>배점</td><td>3</td><td>2</td><td>1.5</td><td>1</td><td>0.5</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table><tr><td>연번</td><td>추진과제</td><td>주요내용</td><td>시행일자</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추진과제 수립 공문(전자문서), 추진과제 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td></tr>
<tr><td>평가근거/자료</td><td colspan="4">○ 2015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 부서역량</td><td>2-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자원관리(대비)</td><td>관리대상</td><td>배점</td><td>시도 6점, 시군구 6점</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16. (사전분석점검)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안전신문고 지역별 가입 실적(2점)
- 산식 : (지자체별 가입자 수 / 지자체 인구수) × 10,000
<table>
<tr><td>구 분</td><td>상위 20% 이상</td><td>상위 20~50%</td><td>상위 50~90%</td><td>상위 90% 이하</td></tr>
<tr><td>배점</td><td>2</td><td>1.5</td><td>1</td><td>0</td></tr>
</table>
○ (시도, 시군구) 주민들의 안전신고율(2점)
- 산식 : 지자체별 신고건수 / 지자체별 인구수
<table>
<tr><td>구 분</td><td>상위 20% 이상</td><td>상위 20~50%</td><td>상위 50~90%</td><td>상위 90% 이하</td></tr>
<tr><td>배점</td><td>2</td><td>1.5</td><td>1</td><td>0</td></tr>
</table>
○ (시도, 시군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를 수용한 비율(2점)
- 산식 : 지자체별 신고 수용건수(일부수용 포함)/지자체별 신고건수
<table>
<tr><td>구 분</td><td>80% 이상</td><td>60~80% 미만</td><td>40~60% 미만</td><td>40% 미만</td></tr>
<tr><td>배점</td><td>2</td><td>1</td><td>0.5</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안전신문고 시스템 상 기록된 신고내역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자체 인구수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발표하는 주요통계집 활용 ('15.1.1 인구 기준)
- 지자체별 회원 가입자수 : 회원가입시 기입한 주소 기준
- 신고건수 :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신고발생지역 기준 신고건수
- 수용건수 :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신고 중 수용 및 일부 수용된 건수
※ 다수 부처 및 취하신고는 제외</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국민안전처(안전개선과) 자체 분석 결과
- 안전신문고 시스템 상 통계 현황(회원가입자수, 신고건수, 수용 및 일부수용건수)</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통계자료 활용
○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시·도(시·군·구) 주민등록인구 활용</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안전개선과 양선화(02-2100-5065)</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2. 재난관리부서 역량</td><td>2-2. 재난관리 물적 · 제도적 시스템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구조적대책</td><td>배점</td><td>시도 7점, 시군구 7점</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2-2-17.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 관리 실적 (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 관리 실적 (4점)
① 2015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정기) 계획 수립 여부
②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 · 단기계획의 수립
③ 일제조사 결과를 국민안전처에 통보 여부
<table><tr><td>구분</td><td>3종 이상 이행</td><td>2종 이행</td><td>1종 이행</td><td>미이행</td></tr><tr><td>배점</td><td>4점</td><td>2점</td><td>1점</td><td>0점</td></tr></table>○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점검 실적 (3점)
<table><tr><td>구분</td><td>5회 이상</td><td>3회 이상</td><td>3회 미만</td><td>미점검</td></tr><tr><td>배점</td><td>3점</td><td>2점</td><td>1점</td><td>0점</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관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정기 조사계획 수립 및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 · 단기계획의 수립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2015년도 일제조사 결과를 국민안전처 제출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값 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 관리 실적
<table><tr><td>연번</td><td>건 명</td><td>주요내용</td><td>시행일자</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일제조사계획 및 장기 · 단기계획 수립 공문(전자문서), 조사결과 제출공문(전자문서- 첨부서류 미첨부)</td></tr>
<tr><td>평가근거
/자료</td><td colspan="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동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제32조～제34조</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안전점검과 김선웅(02-2100-0494)</td></tr>
</table>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지표별 점검기준

<table>
<tr><td>구 분</td><td>3.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td><td>3-1.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구조적, 비구조적 대책</td><td>배점</td><td>시도 3, 시군구 3</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1-1.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 감면 홍보 등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시군구, 세종)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홍보 등 실적 (3점)
<table>
<tr><td>구분</td><td>부서협의 및 홍보 이행</td><td>부서협의 및 홍보 중 하나만 이행</td><td>부서협의 및 홍보 미이행</td></tr>
<tr><td>배점</td><td>3</td><td>2</td><td>0</td></tr>
</table>
○ (시도) 관할 시군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홍보 독려 및 회의 개최 실적 (3점)
- 관할 시군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감면 홍보 등 독려 실적 (1.5점)
관할 시군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홍보 등 실적 점수의 합/시군구수/3×1.5점
- 관할 시군구 방재, 건축, 세무분야 직원대상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감면 회의개최 실적 (1.5점)
(방재분야 참석자수 + 건축분야 참석자 수 + 세무분야 참석자 수)/시군구수/3×1.5점</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시군구(세종)는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건축 및 세무부서와의 업무협의 및 홍보실적 등에 따라 점수 부여
- 부서협의 실적은 당해 시군구의 건축 및 세무부서와 협의한 실적을 말함
* 건축부서나 세무부서 1곳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만 이행한 것으로 배점
- 홍보실적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내용을 유선 방송, 일간지, 반상회보,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 실적 인정
○ (시도) 관할 시군구의 실적에 대한 독려 점수와 시도 자체 회의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동일분야 1명이상 참석한 경우 1명으로 처리</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군구, 세종)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홍보 등 실적
<table>
<tr><td rowspan="2">시군별</td><td colspan="3">홍보</td><td colspan="2">협의</td><td rowspan="2">점수</td></tr>
<tr><td>일자</td><td>홍보매체</td><td>홍보기간</td><td>일자</td><td>협의부서</td></tr>
<tr><td>00시</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00군</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홍보는 대표적인 실적만 기재(공문 및 홍보사진 첨부)
○ (시도) 관할 시군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홍보 독려 및 회의 개최 실적
- 시군구 방재, 건축, 세무 직원대상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감면 관련 회의개최 실적
<table>
<tr><td rowspan="2">일시</td><td colspan="4">참석자</td><td rowspan="2">비고</td></tr>
<tr><td>소속</td><td>직</td><td>성명</td><td>서명</td></tr>
<tr><td rowspan="3"></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회의 개최 공문 및 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첨부(참석자 명단 별첨)</td></tr>
<tr><td>점검근거/자료</td><td colspan="4">○「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추진협조 요청
: 지진방재과-1526(2015.4.14.)</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지진방재과 설재희(02-2100-0665)</td></tr>
</table>

구 분	3.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	3-1.구성원의 지식 · 기술 활용	점검대상기관	시도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복구)	복구사업 추진	배점	시도 4
세부지표	3-1-2. (사전분석점검) 재난경험자 심리안정지원에 따른 재난심리지원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재난경험자 심리안정지원에 따른 재난심리지원 상담 및 재난관리기금활용실적 (4점)

- 산식① : (상담실적/상담목표)X100% 에 따른 구간별 점수 환산(만점 70점)

구 분	재난심리지원 상담실적		
	상담목표(A)	상담실적(B)	기준점수(C)=(B/A)×100
○○시도	붙임자료참조	○○○명	100%미만 30점, 100%이상 50점, 125%이상 60점, 150% 이상 70점

- 산식② : 재난관리기금 재난심리조례개정 + 재난관리기금 재난심리지원 활용실적(만점30점)

구 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재난심리지원사용 조례개정(A)	재난관리기금 재난심리지원 활용실적(B)	C=A+B
○○시도	개정완료 5점, 미개정 0점	기금활용 25점, 미활용 0점	

- 시도별 점수(총점) = 산식① + 산식②

○ 배점기준

구 분	최상위 시도 3	차상위 시도 3	중위 시도 5	차하위 시도 3	최하위 시도 3
배 점	4	3	2	1	0

측정기준

○ 시·도별 재난심리 국고보조금 교부대비 재난심리상담 실적(만점 70점)
- 시도별로 설정된 상담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구간별 70점 만점기준 설정 (시도별 상담목표는 기 시행된 '15년 재난심리업무추진계획에 따름)
- 100% 미만 달성(30점), 100% 이상 달성(50점), 125% 이상 달성(60점), 150% 이상 달성(70점) 부여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재난심리지원활용 실적(만점 30점)
- 시 · 도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재난심리지원사용 가능 조례개정 여부 (조례 개정 시도 5점, 조례 미 개정 시도 0점)
-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심리지원활용 여부(기금 활용시도 25점, 미 활용시도 0점)

증빙자료

○ (시도) 국민안전처(재난구호과) 자체 분석결과
- **매분기** 제출하는 재난심리지원 상담활동 실적 반영(2015년 상담활동 실적)

※ 2015 시도별 재난심리 상담목표 인원(참조 8)

점검근거/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5항(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및 시행령 제74조의8(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문 의 처

○ 재난구호과 김광석(02-2100-0787)

<table>
<tr><td>구 분</td><td>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td><td>3-1.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기타)</td><td>재난관리역량강화</td><td>배점</td><td>시도 3, 시군구 3</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1-3.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관할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교육 독려 실적 (3점)
관할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교육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3점×3점
○ (시군구, 세종, 제주)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교육 실적 (3점)
- 산식 : (참석인원/대상인원)
<table><tr><td>구분</td><td>배점 (①)</td><td>참석률 (②)</td><td>점수(채점)[①×②]</td></tr><tr><td>산식</td><td>3</td><td></td><td></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교육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 관할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교육 독려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자율방재단 주체로 자체교육을 한 경우도 인정
- 식당 등에서 교육 목적이 아닌 간담회 등을 위한 실적은 불인정
-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체교육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관할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교육 독려 실적
<table><tr><td>시군별</td><td>점 수</td><td>비 고</td></tr><tr><td>000시</td><td></td><td></td></tr><tr><td>000군</td><td></td><td></td></tr><tr><td>합계</td><td></td><td></td></tr><tr><td>산식</td><td colspan="2">[(관할 사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교육 실적 점수의 합/관할 사군구 수)/3점]×3점</td></tr><tr><td>점수</td><td colspan="2"></td></tr></table>-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채점 집계표 사본
○ (시군구, 세종, 제주)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교육 실적
<table><tr><td>대상인원(명)</td><td>참석인원(명)</td><td>참석률</td><td>점수</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참석률 = (참석인원/대상인원)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계획(전자문서) 및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메모보고), 참석자 서명부, 교육교재 등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참고 9)
※ 참석결과 보고서에는 장소 및 교육방법을 알 수 있는 사진 첨부</td></tr>
<tr><td>점검근거/자료</td><td colspan="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2조(교육 및 훈련 등)</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자연재난대응과 권영일(02-2100-0717)</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td><td>3-1.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td><td>점검대상기관</td><td>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기타)</td><td>교육훈련</td><td>배점</td><td>시군구 7</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1-4. 내실 있는 풍수해 대피 현장훈련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군구) 내실 있는 풍수해 대피 현장훈련 실적(5점)
<table>
<tr><td>구분</td><td>대피훈련 (2점)</td><td>미흡사항 발굴 (1점)</td><td>유관기관 참여 (1점)</td><td>지역주민 참여 (1점)</td></tr>
<tr><td>배점</td><td>실시 2, 미실시 0</td><td>발굴 1, 미발굴 0</td><td>참여 1, 미참여 0</td><td>참여 1, 미참여 0</td></tr>
</table>
○ (시군구) 저수지·댐별 주민대피계획 보완·수립 및 교육실적 (2점)
<table>
<tr><td>구분</td><td>주민대피계획 수립·보완 (1점)</td><td>주민대피계획 사전 교육 (1점)</td></tr>
<tr><td>배점</td><td>보완 1, 미보완 0</td><td>실시 1, 미실시 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풍수해 대피 현장훈련, 미흡사항 발굴, 유관기관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아래 훈련은 불인정
√ 도상훈련(토론식훈련) 및 을지연습 훈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때 지진대비 민방위훈련, 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
√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풍수해 훈련이 아닌 소방관련 훈련
√ 산사태 훈련 및 정전 훈련
- 해당 지자체가 주관기관인 경우 인정되나, 참여한 기관인 경우 불인정
- 지역자율방재단 주관 모의 또는 대피훈련 인정
- 대피훈련시 유관기관 참여 여부에 따라 점수부여(3개 기관 이상)
- 대피훈련시 지역주민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2명 이상)
※ 유관기관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농어촌공사,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도 : 도 단위 기관, 시구구 : 시군구 단위 기관)
※ 민간단체 : 건설기계협회, 건설협회, 열관리협회, 자원순환재활용협회, 폐기물협회 등 민간단체(도 : 도 단위 민간단체, 시군구 : 시군구 단위 민간단체)
○ 저수지 · 댐 EAP · 주민대피계획이 없는 지역*은 결측값 2점 인정
※ 저수지 · 댐 EAP 및 주민대피계획 미수립 지자체 현황 (참고 8)
< 대피계획 보완 및 교육 실적 >
○ 훈련을 위해 주민대피계획을 현실에 맞게 보완·수립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주민대피 안내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군구) 내실 있는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 실적
<table>
<tr><td colspan="3">대피훈련</td><td rowspan="2">미흡사항 발굴여부</td><td rowspan="2">유관기관 참여여부 (기관명)</td><td rowspan="2">지역주민 참여여부 (명)</td><td colspan="5">점수</td></tr>
<tr><td>일시</td><td>장소</td><td>대상</td><td>훈련</td><td>미흡 사항</td><td>유관 기관</td><td>지역 주민</td><td>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훈련실시 계획 및 훈련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참석자 명단(서명) 사본
○ (시군구) 주민대피계획 수립 · 보완자료 및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서(전자문서)</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훈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재난관리총괄과 한진택(02-2100-0678)
○ 재난경감과 김영대(02-2100-0631)</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3.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td><td>3-1.구성원의 지식 · 기술 활용</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자원관리(대비)</td><td>관리대상</td><td>배점</td><td>시도 5, 시군구 5</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1-5.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관할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독려 (5점)
관할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5점×5점
○ (시군구, 세종) 폭염 취약계층 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실적 (5점)
-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조사 실적(1점)
<table>
<tr><td>구분</td><td>조사 실시</td><td>미조사</td></tr>
<tr><td>배점</td><td>1</td><td>0</td></tr>
</table>
-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보호 재난도우미 확보 지정 실적 (1점)
<table>
<tr><td>구분</td><td>지정</td><td>미지정</td></tr>
<tr><td>배점</td><td>1</td><td>0</td></tr>
</table>
-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보호 재난도우미 간담회 개최 실적 (1점)
<table>
<tr><td>구분</td><td>개최</td><td>미개최</td></tr>
<tr><td>배점</td><td>1</td><td>0</td></tr>
</table>
- 폭염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 정비 및 DB 구축 실적(1점)
<table>
<tr><td>구분</td><td>비상연락망 정비 (0.5점)</td><td>DB 구축 (0.5점)</td></tr>
<tr><td>배점</td><td>정비 0.5, 미정비 0</td><td>구축 0.5, 미구축 0.5</td></tr>
</table>
- 폭염특보 시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SMS) 실적 (1점)
√ 산식 : (발송횟수/특보 발표 횟수)×100(%)
<table>
<tr><td>구분</td><td>100%</td><td>90～100% 미만</td><td>80～90% 미만</td><td>80% 미만</td></tr>
<tr><td>배점</td><td>1</td><td>0.5</td><td>0.3</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시도) 관할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조사 및 재난도우미 확보 지정 운영 실적에 따라 부여
○ (시군구, 세종) 폭염 취약계층 파악 및 재난도우미 확보 및 간담회 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폭염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비상연락 정비 및 DB 구축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폭염특보 시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 발송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폭염특보 미 발표지역은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SNS) 실적은 결측값 1점 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관할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실적</td></tr>
</table>

시군별	점수					비고
	조사	도우미지정	간담회	비상연락망 · DB	문자서비스	
000시						
000군						
합계						
산식	[(관할 시·군·구 폭염 취약계층 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5점]×5점					
점수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채점 집계표 사본

○ (시군구, 세종) 조사, 재난도우미 확보, 간담회 개최, 비상연락망 정비 및 DB구축 실적

조사 일자	도우미 지정 일자	간담회 개최 일자	연락망 정비 여부	DB구축여부	점수				
					조사	도우미	간담회	DB구축	계

-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도우미 운영계획(전자문서), 연락망 · DB구축자료, 간담회 개치 실적 및 결과보고서(전자문서)

○ (시군구, 세종) 폭염특보 시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문자서비스 실적

발송일시(시간까지)	특보(주의보/경보)	SMS발송 여부	비고
합계			
산식	(발송횟수/특보 발표 횟수)×100(%)		
점수			

- 폭염특보 전파체계(크로샷) 구축 및 문자서비스 결과 등

※ 폭염특보 발표 현황(참고 1)

점검근거/자료	○ 2015 폭염대응 종합대책 통보 : 자연재난대응과-1848(2015.5.25.)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2-2100-0720)

<table>
<tr><td>구 분</td><td>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td><td>3-1.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대응)</td><td>교육훈련</td><td>배점</td><td>시도 6점, 시군구 6점</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1-6.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6점)
① 작성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13종)
*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감염병, 가축질병 등
② 작성율 산식 = 지자체에서 작성한 실적 / 작성대상
* 작성대상 : 상기 자연 및 사회재난 중 소관 매뉴얼의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 작성대상 개수(예, 풍수해에는 태풍, 호우 등이 포함되므로 1개로 봄)
- 작성실적 (3점)
<table>
<tr><td>구분</td><td>작성대상(건) ①</td><td>작성실적(건) ②</td><td>작성율 ②/①</td><td>배점</td><td>점수</td></tr>
<tr><td>배점</td><td></td><td></td><td></td><td>3점</td><td></td></tr>
</table>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실적(자체 훈련) (3점)
<table>
<tr><td>구분</td><td>6회 이상</td><td>4회 이상</td><td>3회 이상</td><td>2회 이상</td><td>1회 이하</td></tr>
<tr><td>배점</td><td>3</td><td>2.5</td><td>2</td><td>1</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작성 및 활용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실적
* 재난유형별 실무, 행동 매뉴얼 작성 실적을 말함.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실적(자체 훈련)</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활용 실적
<table>
<tr><td>연번</td><td>재난유형별</td><td>작성(활용)일자</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관련 자료(전자문서 등)</td></tr>
<tr><td>평가근거/자료</td><td colspan="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35조(재난대비훈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재난관리총괄과 노형관(02-2100-0688)</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3.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td><td>3-2. 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상황관리(대비)</td><td>상호협력체계</td><td>배점</td><td>시도 4, 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2-1. 지역의 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사이에는 방재에 관한 어느 정도 협력관계 실적 (UN ISDR 캠페인 지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지역의 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사이에는 방재에 관한 어느 정도 협력관계 실적 (4점)
- 대상 : 자원봉사자, NGO, 학계(관련대학 등), 연구원, 과학기술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위한 위촉 및 협의 등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참여인원 (2.0점)</td><td colspan="3">참여단체 (2.0점)</td></tr>
<tr><td>50명 이상</td><td>10～50명 미만</td><td>10명 미만</td><td>5개 이상</td><td>3～4개</td><td>2개 이하</td></tr>
<tr><td>배점</td><td>2.0</td><td>1.5</td><td>1</td><td>2.0</td><td>1.5</td><td>1</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지역의 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사이에서 방재에 관한 협력관계의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참여인원 및 단체에 대하여는 위촉 등 조치된 경우 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지역의 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사이에서 방재 협력관계 실적
<table>
<tr><td colspan="2">참여인원 위촉</td><td colspan="2">참여단체</td><td rowspan="2">점수</td></tr>
<tr><td>일시</td><td>인원</td><td>일시</td><td>참여단체명칭</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참여단체 및 참여인원 관련 위촉 대상자 명부 등 서류(전자문서)</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점검항목(1-2)</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재난관리총괄과 한진택(02-2100-0678)</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3.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td><td>3-2. 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td><td>점검대상기관</td><td>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상황관리(대비)</td><td>상호협력체계</td><td>배점</td><td>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2-2. 태풍 북상에 따른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사전통제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군구) 태풍 북상에 따른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2점)
<table><tr><td>내습횟수</td><td>통제 실시</td><td>통제 미실시</td></tr><tr><td>1회</td><td>2점</td><td>0점</td></tr><tr><td>2회</td><td>2점</td><td>0점</td></tr><tr><td>3회 이상</td><td>2점</td><td>0점</td></tr></table>○ (시군구) 유관기관(경찰서) 협조체계 가동 실적 (2점)
<table><tr><td>내습횟수</td><td>경찰서 참여</td><td>경찰서 미참여</td></tr><tr><td>1회</td><td>2점</td><td>0점</td></tr><tr><td>2회</td><td>2점</td><td>0점</td></tr><tr><td>3회 이상</td><td>2점</td><td>0점</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태풍 북상에 따른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태풍이 2회 이상 내습 시에는 평균점수 부여
* 1회는 통제, 1회는 미실시 한 경우 1점 부여
○ 경찰서 협조체계 가동 실적에 따라 평균점수 부여
* 1회는 참여, 1회는 미참여 한 경우 1점 부여
○ 태풍 미 내습시 결측값 4점 인정
※ 인명피해 우려지역
- 하상도로, 세월교, 방파제, 갯바위 연육교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군구) 태풍 북상에 따른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사전통제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실적
<table><tr><td rowspan="2">연번</td><td rowspan="2">일자</td><td rowspan="2">태풍명</td><td rowspan="2">사전통제
지역</td><td rowspan="2">경찰서
협조 여부</td><td colspan="3">점수</td></tr><tr><td>사전
통제</td><td>유관
기관</td><td>계</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사전통제 결과보고(전자문서, 메모보고, 상황전파시스템 등) 및 경찰력 지원 협조요청(전자문서), 유관기관 근무 실태(사진 등 첨부)(전자문서) 자료등
※ 공정한 점검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태풍 특보지역 국민안전처 제공 (참고 2)</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3(2015.3.12.)</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자연재난대응과 신명수(02-2100-0719)</td></tr>
</table>

구 분	3.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대비)	상호협력체계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3-2-3. 태풍 북상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조기 가동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조기 가동 실적 (3점)

내습횟수	예비특보 발표 1일 전	예비특보 발표 후 12시간 전	예비특보 발표 후 6시간 전	예비특보 발표 후 1시간 전	예비특보 발표 후
1회	3점	2점	1점	0.5점	0점
2회	3점	2점	1점	0.5점	0점
3회 이상	3점	2점	1점	0.5점	0점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참여기관 실적 (2점)

- 산식 : (태풍별 참여 인원 합/ 태풍별 참여 대상인원 합)

구분	배점 (①)	참여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2		

※ 태풍이 2회 이상 내습한 경우에는 누계로 참여률 계산

측정기준

○ 태풍 북상에 따른 유관기관 비상근무 조기 가동 및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점수 부여

- 태풍 주의보, 경보 특보 발표 전 예비특보 발표되지 않은 지자체는 대상이 아니므로 결측값 인정
  * 태풍 2회 내습 중 1회 예비특보 미발표 된 경우 예비특보 발표 된 횟수로 점수 부여
- 조기가동 실적은 태풍이 다수 내습 시 각 태풍 비상근무 시기별 평균점수 부여
  *1회는 1일전, 1회는 1시간 전 가동한 경우 2.0점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태풍 : 중심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
- 태풍 미 내습 시에는 결측값 5점 인정

※ 비상근무 참여 대상기관
- 군부대, 경찰서, 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등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조기 가동 실적

연번	일자	태풍명	참여 시기	참여기관			점수		
				참여 대상	참석 인원	참여율*	조기 가동	참여 기관	계
계									

* 참여율 = (태풍별 참여 인원 합**/ 태풍별 참여 대상인원 합**)

** 우리나라에 태풍 특보가 발표되어 비상근무 하여야 할 대상인원 및 참석인원

- 비상근무 명령(전산문서) 및 비상근무자 등록부

점검근거 /자료	○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3(2015.3.12.)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신명수(02-2100-0719)

<table>
<tr><td>구 분</td><td>3.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td><td>3-2.구성원 간 상호 협력 체계</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상황관리(대비, 대응)</td><td>정보관리</td><td>배점</td><td>시도 6, 시군구 6</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2-4. 태풍 북상에 따른 기관장 주재 사전대책회의(예비특보) 개최 및 홍보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세종시,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유관기관 등) 주재 사전대책회의(예비특보) 개최 실적 (2점)
- 개최율 : 사전대책회의 개최 실적/태풍 예비특보 발표 횟수
<table><tr><td>구분</td><td>배점 (①)</td><td>개최율 (②)</td><td>점수(채점)[①×②]</td></tr><tr><td>산식</td><td>2</td><td></td><td></td></tr></table>○ (시도, 시군구) 태풍 북상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적 (2점)
<table><tr><td>내습횟수</td><td>2점</td><td>1.5점</td><td>1.0점</td><td>0점</td></tr><tr><td>1회</td><td>1회 이상</td><td></td><td></td><td>미실시</td></tr><tr><td>2회</td><td>2회 이상</td><td></td><td>1회</td><td>미실시</td></tr><tr><td>3회 이상</td><td>3회 이상</td><td>2회</td><td>1회</td><td>미실시</td></tr></table>○ (시도, 시군구) 홍보 요청기관 실적 (2점)
<table><tr><td>내습횟수</td><td>3개 기관 이상</td><td>2개 기관</td><td>1개 기관</td><td>미실시</td></tr><tr><td>1회</td><td>2점</td><td>1점</td><td>0.5점</td><td>0점</td></tr><tr><td>2회</td><td>2점</td><td>1점</td><td>0.5점</td><td>0점</td></tr><tr><td>3회 이상</td><td>2점</td><td>1점</td><td>0.5점</td><td>0점</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태풍 북상에 따른 시·도지사(세종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주재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유관기관 등) 사전대책회의(예비특보) 개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부기관장급 이하 주재한 사전대책회의 개최 실적은 불인정
- 태풍내습 별 태풍 주의보, 경보 특보 발표 전 예비특보 발표되지 않은 지자체는 결측값 인정
- 상황판단회의는 불인정
- 태풍특보(주의보, 경보) 발표이후 실시한 대책회의는 개최실적에 불인정
- 동일 태풍 내습 시 2회 이상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태풍 미 내습 시에는 결측값 2점 인정
○ 제주지역만 영향을 미친 태풍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 태풍 북상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적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동일 태풍 내습 시 2회 이상 홍보를 실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동일 홍보사항을 다매체에 홍보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홍보 관련 공보부서로 공문 통보한 경우에는 불인정
- 시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구 홍보 실적은 불인정
- 해당시도에 태풍예비특보, 주의보, 경보가 발표된 시도에 적용하며, 태풍예비특보, 주의보, 경보가 미 발표된 지역은 결측값 인정
- 태풍 미 내습 시 결측값 4점 인정
- 태풍이 2회 이상 내습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적은 1회 내습 시 1회만 인정</td></tr>
</table>

<table>
<tr><td></td><td>

- 홍보 요청기관 실적은 태풍이 2회 이상 내습 시에는 횟수별 평균 점수 부여

* 1회는 3개 이상, 1회는 1개 요청한 경우 1.25점 부여

※ 홍보요청 대상기관
- 중앙 및 지역방송사 또는 유선방송사, 중앙·지역신문사 등

</td></tr>
<tr><td>증빙자료</td><td>

○ (시도, 시군구) 태풍 북상에 따른 기관장 주재 사전대책회의(예비특보) 개최 실적

<table>
<tr><td>연번</td><td>예비특보 발표 일시*</td><td>발표지역</td><td>대책회의개최 일시**</td><td>비 고</td></tr>
<tr><td></td><td></td><td>000시</td><td></td><td></td></tr>
<tr><td></td><td></td><td>0000군</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r>
<tr><td>산식</td><td></td><td colspan="3">(실시/대상)</td></tr>
<tr><td>점수</td><td></td><td></td><td></td><td></td></tr>
</table>

- 대책회의 개최 계획 공문(전자문서) 및 결과보고서(전자문서, 메모보고)

* 특보발표 일시 및 대책회의 개최 일시는 시간까지 표시

○ (시도, 시군구) 태풍 북상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적

<table>
<tr><td>연번</td><td>보도
일자</td><td>태풍명</td><td>언론사명</td><td>보도제목</td><td>홍보내용</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점수</td><td></td><td colspan="4"></td></tr>
</table>

○ (시도, 시군구) 태풍 북상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홍보요청 기관 실적

<table>
<tr><td>연번</td><td>요청
일시</td><td>태풍명</td><td>요청
기관 수</td><td>요청기관명</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r>
<tr><td>산식</td><td></td><td colspan="3">(홍보요청 기관 수/태풍 횟수) * 소수점이하 사사오입</td></tr>
<tr><td>점수</td><td></td><td colspan="3"></td></tr>
</table>

-국민행동요령 홍보 요청(전자문서)(언론보도, 홍보활동 실적자료 등)

※ 공정한 점검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태풍 특보지역 국민안전처 제공 (참고 2)

</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3(2015.3.12.)</td></tr>
<tr><td>문 의 처</td><td>○ 자연재난대응과 신명수(02-2100-0719)</td></tr>
</table>

구 분	3. 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	3-2.구성원 간 상호협력체계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점검결과 환류	배점	시도 4, 시군구 4
세부지표	3-2-5. (사전분석점검)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측정방법

○(시도)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독려 실적 (4점)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 4점×4점

○ (시군구, 세종 · 제주)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4점)

- 재난관리실태 공시 때 공시대상 반영 실적 (1.5점)

구분	배점 (①)	공시율 (②)	점수(채점)[①×②]
산식	1.5		

※공시율=공시한 종류*(종)/13종 * 13종 중 공시한 종류를 말함

-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일정 준수 실적 (1.5점)

구분	'13.3.31 까지 공시	4.15까지 공시	5.15까지 공시	6.30까지 공시	7.1이후 및 미공시
배점	1.5	1.2	0.7	0.2	0

- 재난관리실태 공시 구성 체계 유지 여부 등 (1점)

구분	구성 체계 유지 여부 (0.5점)		세부공시내용 공보 공시 여부 (0.5점)	
	여	부	여	부
배점	0.5	0	0.5	0

측정기준

○ 재난관리실태 공시(시도는 관할 시군구 독려)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공시체계(현황,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증감설명) 유지하지 않으면 불인정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정 운영상황 공시는 불인정
- 세부공시내용 공보 공시여부에서 총괄만 공보에 공시한 경우 불인정

※ 재난관리실태 공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
- (공시대상)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등 13종

증빙자료

○ (시도)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독려 실적

시군별	공시대상 점수	추진일정 준수 점수	구성 체계 유지 점수
000시			
000군			
합계			
산식	[(사·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점수의 합/관할 사·군·구 수)/ 4점]×4점		
점수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채점 집계표 사본

○ (시군구, 세종 · 제주)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공시				공시 일자		구성 체계 유지		세부공시내용 공보고시	
종	공시율	배점	점수	일자	점수	여부	점수	여부	점수
		1.5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자료(자치단체의 공보)

점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 재난관리실태 공시 가이드라인 통보(재난관리총괄과-341, 2015.1.21.)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

<table>
<tr><td>구 분</td><td>3. 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td><td>3-2.구성원 간 상호협력체계</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관리(대비)</td><td>관리대상</td><td>배점</td><td>시도 4, 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2-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2점)
- (시군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관리계획을 8월 31일까지 관할 시 · 도에 제출 여부
- (시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관리계획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여부
<table><tr><td>구분</td><td>기한내 제출</td><td>기한 경과 후 제출</td><td>미제출</td></tr><tr><td>배점</td><td>2</td><td>1</td><td>0</td></tr></table>○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1점)
- (시군구) 시스템에 입력된 자재, 장비의 수 대비 상세현황을 모두 현행화한 수
- (시도) 시스템에 입력된 자재, 장비의 수 대비 상세현황을 모두 현행화한 수, 관할 시군구의 현행화 결과를 취합하여 비율 산정
<table><tr><td>구분</td><td>100%</td><td>95% 이상</td><td>90% 이상</td><td>80% 이상</td><td>70% 미만</td></tr><tr><td>배점</td><td>1</td><td>0.7</td><td>0.5</td><td>0.2</td><td>0</td></tr></table>○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1점)
<table><tr><td>구분</td><td>2건 이상 체결시</td><td>1건 체결시</td><td>미 체결시</td></tr><tr><td>배점</td><td>1</td><td>0.5</td><td>0</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은 제출유무로 판단하며, 시도의 계획은 시군구, 산하기관의 자원조사결과,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점수 인정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된 자재, 장비의 현행화율에 따라 점수 인정
$$\text{현행화율} = \frac{\text{시스템 내 상세현황}^{*}\text{이 현행화 된 자원량}}{\text{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보유량}^{**}} \times 100$$
* 상세현황 : 규격, 보관장소, 담당자, 연락처
** 보유량의 기준은 비축관리계획에 제출된 자원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
○ 업무협약 체결 대상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관리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공문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분석 결과(10월 31일 기준)
○ 업무협약서</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관리), 제44조(응원)
※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 2015-87)
○ 2016년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관리계획 수립지침(재난자원관리과-1646)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추진 철저 및 점검계획(재난자원관리과-667, 940)</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재난관리실 재난자원관리과 정수연(02-2100-0742)</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3.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td><td>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td><td>점검대상기관</td><td colspan="2">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자원관리(대비)</td><td>관리대상</td><td>배점</td><td colspan="2">시도 3, 시군구 3</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5">3-2-7.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 운영 관리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5">○ (시군구, 세종)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 운영 관리 실적 (3점)
- 대상 : ① 수용시설의 관리책임자 지정 ②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③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협의 ④ 수용계획 수립
⑤ 이재민 급식관련 민간구호단체와의 사전협의
<table><tr><td>구분</td><td>5종 실시</td><td>4종 실시</td><td>3종 실시</td><td>2종 실시</td><td>1종 실시</td><td>미실시</td></tr><tr><td>배점</td><td>3</td><td>2</td><td>1.5</td><td>1.0</td><td>0.5</td><td>0</td></tr></table>
○ (시도) 관할 시군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 운영 관리 독려 실적 (3점)
관할 시·군·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 운영 관리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3점 × 3점</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 운영 관리(시도는 관할시군구 독려)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해구호계획 수립, 토지 또는 건물 사용,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 수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국민안전처 제출)
- 구호기관은 구호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
- 구호기관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급식제공을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5">○(시군구, 세종)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 운영 관리 실적
<table><tr><td>연번</td><td>조치할 사항</td><td>지정 · 협의 · 수립일자</td><td>근거</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조치건수</td><td></td><td></td><td></td><td></td></tr><tr><td>점수</td><td></td><td></td><td></td><td></td></tr></table>
- 구호계획 수립 공문(전자문서),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증빙자료, 임시주거시설 관련 계획서, 사전협의 증빙자료 등
○ (시도) 관할 시군구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 운영 관리 독려 실적
<table><tr><td>시군별</td><td>점수</td><td>비고</td></tr><tr><td>000시</td><td></td><td></td></tr><tr><td>000군</td><td></td><td></td></tr><tr><td>합계</td><td></td><td></td></tr><tr><td>산식</td><td colspan="2">[(관할 시·군·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 운영 관리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3점] × 3점</td></tr><tr><td>점수</td><td colspan="2"></td></tr></table>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채점 집계표 사본</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5">○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제5조(재해구호계획 수립),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5">○ 재난구호과 이원우(02-2100-0782)</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3.재난관리네트워크역량</td><td>3-2.구성원 간 상호 협력 체계</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기타)</td><td>재난행정</td><td>배점</td><td>시도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2-8. (사전분석점검)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네트워크 정례회의를 부기관장 이상 주재한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네트워크 정례회의를 부기관장 이상 주재한 실적(4점)
- 산식 : (연간 1회 이상 개최 시군구/관할 시군구 수)×100
<table>
<tr><td>구분</td><td>최상위 시도 2</td><td>차상위 시도 3</td><td>중위 시도 5</td><td>차하위 시도 3</td><td>최하위 시도</td></tr>
<tr><td>배점</td><td>4</td><td>3</td><td>2</td><td>1</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난안전네트워크 정례회의를 부기관장 이상 주재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시도에서 개최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는 반드시 부기관장 이상 결재(전자문서)를 득한 경우 인정
- 부기관장의 참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경우만 인정
- 부기관장 이상 주재한 회의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국민안전처(민관합동지원관실) 자체 분석결과
- 추진실적 반영(9월말 까지 실적)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전자문서)</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년도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기본계획 알림</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민관합동지원관실 이정일(02-2100-0976)</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3.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td><td>3-2.구성원 간 상호 협력 체계</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상황관리(대비)</td><td>상호협력체계</td><td>배점</td><td>시도 4, 시군구 4</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2-9.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 민간단체 사전협조체계 구축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 민간단체 사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 (4점)
<table>
<tr><td>구분</td><td>5개 기관 이상 참여</td><td>3개 기관 이상 참여</td><td>2개 기관 이상 참여</td><td>1개 기관 및 미참여</td></tr>
<tr><td>유관기관 (2.0점)</td><td>2</td><td>1.5</td><td>1</td><td>0</td></tr>
<tr><td>민간단체 (2.0점)</td><td>2</td><td>1.5</td><td>1</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 민단단체 사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유관기관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농어촌공사,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도 : 도 단위 기관, 시구구 : 시군구 단위 기관)
※ 민간단체 : 건설기계협회, 건설협회, 열관리협회, 자원순환재활용협회, 폐기물협회 등 민간단체(도 : 도 단위 민간단체, 시군구 : 시군구 단위 민간단체)</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
<table>
<tr><td>구분</td><td>일시</td><td>장소</td><td>참석기관 · 단체명</td><td>점수</td></tr>
<tr><td>유관기관</td><td></td><td></td><td></td><td></td></tr>
<tr><td>민간단체</td><td></td><td></td><td></td><td></td></tr>
</table>
- 간담회 개최 계획 공문(전자문서) 및 개최 결과 보고서(전자문서)
※ 결과보고서에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첨부</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3(2015.3.12.)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구 분	3.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3-2. 구성원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정책방향	배점	시도 7점, 시군구 7점
세부지표	3-2-10.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적 (신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안전문화 캠페인(취약시설 점검 포함) 및 홍보실적 (3점)

- 캠페인, 언론, 홈페이지 게재, 리후렛, 현수막 등

구 분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2회 미만
배점	3	2	1.5	1	0.5

○ (시도, 시군구) 캠페인 및 홍보 등 재난관련 단체 참여 실적 (2점)

-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안문협 등 자원봉사단체 및 기업체

구 분	5개 단체 이상	3개 단체 이상	1개 단체 이상	참여단체 없음
배점	2	1.5	1	0

○ (시도, 시군구) 안전문화 캠페인 부기관장 이상 참여 및 홍보실적 (2점)

구 분	참여실적		언론홍보	
	참 여	미 참여	실시	미실시
배점	1	0	1	0

측정기준

○ 안전문화 캠페인 등 홍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에 참여한 단체수에 따라 부여
- 1회당 단체별 5명 이상 참여한 경우만 인정
○ 안전문화 캠페인에 기관장이 참여하고 언론에 홍보 된 경우만 인정

증빙자료

○ 캠페인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전자문서)
○ 홍보는 언론보도내용,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 게시된 전경 사진
○ 부기관장 이상 캠페인 참여 전경 사진 및 언론 보도내용

점검근거/자료

○ 2015년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기본계획 : 안전문화교육과-120(2015.1.14.)

문 의 처

○ 안전교육문화과 이성정(02-2100-0512)

<table>
<tr><td>구 분</td><td>3.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td><td>3-2. 구성원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자원관리(대비)</td><td>구조적, 비구조적 대책</td><td>배점</td><td>시도 6점, 시군구 3점</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3-2-11.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3 점)
- 대상 : ①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② 역학조사·방역인력 부족시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
③ 역학조사·방역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④ 진료체계 구축
<table><tr><td>구 분</td><td>4종</td><td>3종</td><td>2종</td><td>1종</td><td>미 확보</td></tr><tr><td>배점</td><td>3</td><td>2</td><td>1</td><td>0.5</td><td>0</td></tr></table>
○ (시도, 시군구) 감염병 유행절기별 예방 홍보 실적 (3 점)
- 언론, 홈페이지 게재, 리후렛, 현수막, 전광판 등
<table><tr><td>구 분</td><td>5회 이상</td><td>3회 이상</td><td>1회 이상</td><td>미 실시</td></tr><tr><td>배점</td><td>3</td><td>2</td><td>1</td><td>0</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역학조사·방역인력 및 격리시설 확보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홍보는 언론보도내용,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 게시 전경 사진 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역학조사·방역인력 지정문서 및 부족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한 문서(전자문서)
- 역학조사 및 방역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포함
○ 진료체계 구축 계획 문서(전자문서)
- 진료체계는 해당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가 완료된 문서</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사회재난대응과 장규식(02-2100-0731)</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3.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td><td>3-2.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td><td>평 가 대상기관</td><td colspan="2">시도, 시군구</td></tr>
<tr><td>재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td><td>구조적대책</td><td>배점</td><td colspan="2">시도 7,시군구 7</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5">3-2-12.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 실적(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5">○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 실적 (7점)
① 월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여부
② 매월 안전강조 주간 중 안전점검 실적
③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기관장 참여(연간)
④ 안전관리헌장 게시 여부
<table>
<tr><td>구 분</td><td>2점</td><td>1.5점</td><td>1점</td><td>0점</td></tr>
<tr><td>행사시행 여부(2점)</td><td>매월시행</td><td></td><td></td><td>미시행</td></tr>
<tr><td>안전점검 실적(2점)</td><td>월 1개소 이상</td><td></td><td></td><td>미실시</td></tr>
<tr><td>기관장 참여(2점)</td><td>4회 이상</td><td>2회 이상</td><td>1회 실시</td><td>미참여</td></tr>
<tr><td>재난 담당부서 안전관리헌장 게시 여부 (1점)</td><td></td><td></td><td>게시</td><td>미게시</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5">○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행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매월 안전강조 주간(안전점검의 날 전·후 1주일) 중 안전점검 실적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중 기관장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 담당부서에 안전관리헌장 게시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5">○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실적
<table>
<tr><td>연번</td><td>건 명</td><td>주요내용</td><td>시행일자</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행사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 안전관리헌장 게시 사진 등 자료(평가단 현지 평가 시 직접 확인)</td></tr>
<tr><td>평가근거/자료</td><td colspan="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련 행사, 교육 홍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에 항상 게시
○ 재난관리기준(안행부 고시 제2010-17호, 제10조 구조적 · 비구조적 대책)</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5">○ 안전점검과 윤정환(02-2100-0501)</td></tr>
</table>

기관역량 지표별 점검기준

<table>
<tr><td>구 분</td><td>4.기관역량</td><td>4-1.기관장 리더십</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기타)</td><td>재난행정</td><td>배점</td><td>시도 6, 시군구 6</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4-1-1. 풍수해 관련 재해취약지역 · 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및 홍보 실적(태풍 · 폭염 제외)</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풍수해 관련 재해취약지역 · 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4점)
<table>
<tr><td>구분</td><td>4회 이상</td><td>3회</td><td>2회</td><td>1회</td><td>미실시</td></tr>
<tr><td>기 관 장 (2점)</td><td>2점</td><td>1.5점</td><td>1점</td><td>0.5점</td><td>0점</td></tr>
<tr><td>부기관장 (2점)</td><td>2점</td><td>1.5점</td><td>1점</td><td>0.5점</td><td>0점</td></tr>
</table>
○ (시도, 시군구) 풍수해 관련 재해취약지역 · 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 (2점)
<table>
<tr><td>구분</td><td>4회 이상</td><td>3회</td><td>2회</td><td>1회 이하</td></tr>
<tr><td>배점</td><td>2</td><td>1.5</td><td>1</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풍수해 관련 재해취약지역 · 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및 방문결과 언론홍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해취약지역 · 시설을 동일 일자에 2회 이상 방문을 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동일 일자에 기관장, 부기관장 등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동일 일자에 다수의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미결재시 불인정(언론 보도된 경우 제외)
- 부기관장 미만 현장방문 실적은 불인정
- 사진자료 또는 지시사항은 불인정
- 태풍 · 폭염 관련 현장방문 실적은 불인정
- 복구관련 군부대 방문 등 현장점검 취지에 맞지 않는 방문, 유원시설 · 놀이시설 방문 시에는 불인정
- 태풍 · 풍수해 · 폭염 관련 동시 방문한 실적은 점검지표 중 1개 지표만 인정
- 재해취약지역 · 시설에 대한 동일내용을 2회 이상 언론홍보를 실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동일 홍보사항을 다매체에 언론 홍보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부기관장과 기관장이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1회로 인정
- 현장방문 취지에 맞지 않은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은 불인정
- 기관장 2회, 부기관장 2회만 인정
○ 언론홍보 : 언론기고, 브리핑, 방송출연(지상파 · 케이블TV, 라디오 등), 신문 등</td></tr>
</table>

<table>
<tr><td></td><td>※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대대책법 제2조제3호)
※ (재해취약지역) 수해복구사업장, 재해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배수펌프장, 노후저수지 등 재해에 위험하거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td></tr>
<tr><td>증빙자료</td><td>○ (시도, 시군구) 풍수해 관련 재해취약지역 · 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태풍관련 제외)
<table>
<tr><th>연번</th><th>방문 일시</th><th>지역 · 시설명</th><th>방문자
(기관장/부기관장)</th><th>근거</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점수</td><td>기관장</td><td></td><td></td><td></td></tr>
<tr><td>부기관장</td><td></td><td></td><td></td></tr>
</table>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전자문서)(언론보도, 현장방문 실적자료 등)
○ (시도, 시군구) 풍수해 관련 재해취약지역 · 시설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언론홍보 실적(태풍제외)
<table>
<tr><th>연번</th><th>보도
일자</th><th>언론사명</th><th>지역 · 시설명</th><th>방문자
(기관장/부기관장)</th><th>보도제목</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점수</td><td></td><td colspan="4"></td></tr>
</table>
- 언론홍보 결과 스크랩 자료(언론보도, 홍보활동 실적자료 등)
※ 사진자료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3(2015.3.12.)</td></tr>
<tr><td>문 의 처</td><td>○ 자연재난대응과 신명수(02-2100-0719)</td></tr>
</table>

구 분	4.기관역량	4-1.기관장리더십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재난행정	배점	시도 4, 시군구 4
세부지표	4-1-2. 태풍 북상에 따른 재해취약시설·지역에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사전점검 실적 (풍수해·폭염 제외)			

측정방법

○(시도, 시군구) 기관장 사전 현장점검 실적 (2점)

내습횟수	2점	1.0점	0.5점	0점
1회	1회 이상			미실시
2회	2회 이상	1회		미실시
3회 이상	3회 이상	2회	1회	미실시

○ (시도, 시군구) 부기관장 이하 간부공무원 사전 현장점검 실적 (2점)

내습횟수	2점	1.5점	1.0점	0.5점	0점
1회	2회 이상		1회		미실시
2회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3회 이상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이하

측정기준

○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시설·지역에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의 사전 현장점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태풍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가 미 발표된 지역은 결측값 인정**
- 대풍 북상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등을 동일일자에 2회 이상 방문을 실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동일 일자에 기관장, 부기관장 등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동일 일자에 다수의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동일 태풍 내습 시 2회 이상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기관장, 간부공무원이 개인별로 별도로 점검하는 경우 인정
  √ 간부공무원이 기관장을 현장 안내하는 경우에는 기관장만 1회 인정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미결재시 불인정(언론 보도된 경우 제외)
- 사진자료 또는 지시사항은 불인정
- **태풍 미 내습 시 결측값 4점 인정하고 풍수해·폭염 관련 현장방문 실적은 불인정**
- **태풍 내습 시 사전현장점검은 내습 횟수별 부기관장 이하는 각 2회 인정횟수(1회 내습 2회, 2회 내습 4회) 이상은 불인정하고, 풍수해·폭염 등 동시 방문한 경우 점검지표 중 1개 지표만 인정**
  *** 부기관장 이하 태풍 2회 내습 시 첫 번째 태풍 1회 점검, 두 번째 태풍 3회 점검인 경우 총 4회 점검이나 4점을 부여하지 않고 1.25점 부여**
- 부기관장 태풍횟수별 1회 이상 현장 점검한 경우 1회 인정, 미실시한 경우 태풍 내습 횟수별로 각 1회 불인정

○ 간부공무원 : 부기관장, 실·국장, 과장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태풍 북상에 따른 재해취약시설·지역에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하 간부공무원 사전점검 실적

연번	점검 일시	지역·시설명	방문자 (기관장/간부공원)	근거
합계				
산식			/	
점수	기관장			
	간부공무원			

- 현장점검 계획(전자문서) 및 점검결과 보고서(전자문서, 메모보고), 언론보도 등

※ 공정한 점검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태풍 특보지역 국민안잔처 제공(참고 2)

점검근거 /자료	○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3(2015.3.12.)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신명수(02-2100-0719)

구 분	4.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재난행정	배점	시도 6, 시군구 6
세부지표	**4-1-3. 폭염 관련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및 홍보 실적(태풍·풍수해 제외)**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폭염 관련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4점)

- 대상 : 무더위 쉼터, 농촌 영농작업장, 건설·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

구 분	3회 이상	2회	1회	미실시
기 관 장 (2점)	2.0점	1.0점	0.5점	0점
부기관장 (2점)	2.0점	1.0점	0.5점	0점

○ (시도, 시군구) 폭염 관련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 (2점)

- 대상 : 무더위 쉼터, 농촌 영농작업장, 건설·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

구분	3회 이상	2회	1회 이하
배점	2점	1점	0.5점

측정기준

○ 폭염관련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및 방문결과 언론홍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폭염관련 동일 일자에 2회 이상 방문을 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 동일 일자에 기관장, 부기관장 등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 동일 일자에 다수의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미결재시 불인정(언론 보도된 경우 제외)
- 부기관장 미만 현장방문 실적은 불인정
- 태풍·풍수해 관련 현장 방문 실적은 불인정
- 사진자료 또는 지시사항은 불인정
- 태풍·풍수해 등 현장방문과 동시 실시한 방문실적은 점검지표 중 1개 지표만 인정
- 무더위 쉼터 방문 등 동일내용을 2회 이상 언론홍보를 실시하여도 실적은 1회만 인정
- 동일 홍보사항을 다매체에 언론 홍보하는 경우에도 1회만 인정
- 기관장 2회, 부기관장 1회만 인정

○ 언론홍보 : 언론기고, 브리핑, 방송출연(지상파·케이블TV, 라디오 등), 신문 등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폭염관련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

연번	방문 일시	지역·시설명	방문자 (기관장/부기관장)	방문내용
합계			/	
점수	기관장			
	부기관장			

-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전자문서)(언론보도, 현장방문 실적자료 등)

○ (시도, 시군구) 폭염 관련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 언론홍보 실적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지역·시설명	방문자 (기관장/부기관장)	보도제목
합계					
점수					

- 언론홍보 결과 스크랩 자료(언론보도, 홍보활동 실적자료 등)
  ※ 사진자료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점검근거/자료

○ 2015 폭염대응 종합대책 통보 : 자연재난대응과-1848(2015.5.25.)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권영일(02-2100-0717)

<table>
<tr><td>구 분</td><td>4. 기관역량</td><td>4-1.기관장 리더십</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기타)</td><td>재난행정</td><td>배점</td><td>시도 10, 시군구 10</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4-1-4.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정성적 점검)</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 (5점)
<table><tr><td>구분</td><td>기관장 인터뷰</td><td>부기관장 인터뷰</td><td>미실시</td></tr><tr><td>배점</td><td>5</td><td>2</td><td>0</td></tr></table>
○ (시도, 시군구)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결과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도, 추진의지, 인센티브 등 실적 (정성적 점검, 5점)
<table><tr><td>구분</td><td>상위기관</td><td>중위기관</td><td>하위기관</td></tr><tr><td>배점</td><td>5</td><td>3</td><td>2</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부기관장 이상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해외출장, 공무로 인한 중앙 등 출장)로 인터뷰를 못한 경우 관련 근거자표 제출 시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결정
√ 지침 통보 후 부기관장 이상 일정이 정해진 경우에는 불인정
- 시도에서 시군구 점검 시 인터뷰 실시
* 인터뷰는 중앙합동점검단 및 시도에서 점검 시 실시하는 것을 말함

○ 인터뷰 결과 관심도, 추진의지, 인센티브 등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정성적 점검)
* (시도)상위 4개 기관, 중위 9개 기관, 하위 4개 기관(점검반별로 그룹 기관수 구분)
(시군)상위 5개 기관, 중위 10개 기관, 하위 5개 기관(점검반별로 그룹 기관수 구분)
(자치구)상위 2개 기관, 중위 6개 기관, 하위 2개 기관(점검반별로 그룹 기관수 구분)
- 관심도, 추진의지, 인센티브 등의 점수에 대하여는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결정
- 시도에서 시군구 점검 시에도 이에 준하여 점수 부여
√ 상위 · 하위기관 각 25%, 중위기관 50% 선정하되, 상위 · 하위기관의 선정숫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사

※ 인터뷰 예시
① 재난관리를 시정방침에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업무보고 시 재난관리 관련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③ 재난 취약·위험지구 현황 파악과 현장 시찰은 하셨습니까?
④ 재난안전관련 교육·홍보·행사·훈련 참여 및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⑤「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⑥ 재난관리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할 생각은 있습니까?
⑦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습니까?</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인터뷰 실시</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4.기관역량</td><td>4-2.행 · 재정적 지원</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자원관리(대비)</td><td>관리대상</td><td>배점</td><td>시도 5, 시군구 5</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4-2-1.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관할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독려 실적 (5점)
관할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5점×5점

○ (시군구, 세종)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 (5점)
<table><tr><td>구 분</td><td>전년도 대비
200% 이상
또는
예산확보율
(상위 20%)</td><td>전년도 대비
150～200% 미만
또는
예산확보율
(상위 20~50%)</td><td>전년도 대비
100～150% 미만
또는
예산확보율
(상위 50~80% 이상)</td><td>전년도 대비
100% 미만
또는
예산확보율
(상위 80% 미만)</td></tr><tr><td>배점</td><td>5</td><td>3</td><td>3</td><td>1</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시도는 관할시군구 독려)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전년도 대비 예산확보비율과 확보 금액 중 기관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

※ 지역자율방재단
-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역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관할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독려 실적
<table><tr><td>시군구별</td><td>점수</td><td>비 고</td></tr><tr><td>000시</td><td></td><td></td></tr><tr><td>000군</td><td></td><td></td></tr><tr><td>합계</td><td></td><td></td></tr><tr><td>산식</td><td colspan="2">[(관할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5점]×5점</td></tr><tr><td>점수</td><td colspan="2"></td></tr></table>-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채점 집계표 사본

○ (시군구, 세종)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확보 실적
<table><tr><td>총 예산</td><td>전년도 예산</td><td>금년도 예산</td><td>확보율(%)</td><td>증가율(%)</td><td>점수</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확보율(%) = (금년도 예산/지자체 총예산)/100(%)
※증가율(%) = (금년도 예산/전년도 예산)/100(%)
- 전년도 및 금년도 예산서 자료 등</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자연재난대응과 권영일(02-2100-0717)</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4.기관장 역량</td><td>4-2.행 · 재정적 지원</td><td colspan="2">점검대상기관</td><td>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자원관리(대비)</td><td>관리대상</td><td>배점</td><td colspan="2">시군구 8</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5">4-2-2. (사전분석점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예산투자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5">○ (시군구)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예산투자 실적(8점)
- 산식 : [재해예방사업 투자비(억원)/보통세(억원)]×100(%)
<table>
<tr><td>구 분</td><td>45% 이상</td><td>35~45% 미만</td><td>25~35% 미만</td><td>15~35% 미만</td><td>15% 미만</td></tr>
<tr><td>배점</td><td>8</td><td>6</td><td>4</td><td>2</td><td>1</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5">○ 최근 3년간(2011~2013)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예산투자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비 중에서 순수한 시군구비만 인정

※ 재해예방사업비(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5">○ (시군구) 국민안전처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5">○ 2014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5">○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구 분	4.기관역량	4-2.행 · 재정적 지원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상황관리(복구)	복구사업 추진	배점	시도 12, 시군구 8
세부지표	4-2-3. (사전분석점검)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신속한 복구계획 확정 · 통보 및 예산 확보 실적			

측정방법

○ (시도) 재해복구사업 중앙 확정 · 통보 받은 후 시 · 군 · 구로 확정 통보한 기간 (세종제외, 4점)

구 분	2일 이내	3~4일	5~6일	7일 이후
배점	4	3	2	1

○ (시도) 재해복구사업 중앙 확정 · 통보 받은 후 복구예산(국비 편성 분) 편성 소요기간 (4점)

구 분	1일 이내	2일	3일	4일 이후
배점	4	3	2	1

○ (시도) 재해복구사업 국비 예산 확보 후 예산(자체예산) 편성기간 (4점)

구분	10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후
산식	4	3	2	1

○ (시군구) 재해복구사업 시도 확정 · 통보 받은 예산편성(국비, 도비) 실적 (4점)

구 분	1일 이내	2일	3일	4일 이후
배점	4	3	2	1

○ (시군구) 재해복구사업 도비예산 확보 통보 받은 후 예산(자체예산) 편성 소요기간 (4점)

구 분	10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후
배점	4	3	2	1

측정기준

○ 재해복구사업 중앙(시도) 확정 · 통보 받은 후 복구예산 편성 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재해복구는 해당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 지자체만 점검, 미해당 지자체는 결측값 8점 인정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는 기관으로 확정통보는 결측값 8점 인정
- 확정 · 통보 받은 후 바로 휴일인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일수 계산

○ 복구사업은 2014년도 국고지원대상(공공시설)으로 지정된 수해복구사업임
- 동일 시군구에서 2회 이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산술 평균 점수 부여

○ 재해복구사업 예산 중 시·도(자체예산)예산 편성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군구는 시도에서 확정 · 통보 후 자체예산 편성 소요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시도) 재해복구사업 중앙 확정 통보 후 시군구로 확정 통보 및 복구예산 편성 실적

확정통보 일자	시군구로 확정 통보 일자	시·도예산 확보일자	점수		
			시군구 통보일자	시·도 예산 확보 일자	계

- 재해복구사업 확정 · 통보 공문(중앙 및 시도, 전자문서), 성립전 예산집행, 예비비 사용승인,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시도) 재해복구사업 예산 중 시·도(자체예산)예산 편성 실적

국비예산통보일	자체 예산 편성 일자	점수	비고

- 예비비,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시군구) 재해복구사업 시도 확정 통보 받은 후 복구 예산 편성 실적

확정통보 일자	복구예산 편성 일자	점수	비고

- 성립 전 예산집행, 예비비 사용승인,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시군구) 재해복구사업 예산 중 시군구(자체예산)예산 편성 실적

시도예산통보일	자체 예산 편성 일자	점수	비고

- 예비비, 추가경정 예산서 등 예산확보 관련 증빙 자료
- 예산확보 및 편성소요가간은 NDMS 재난관리시스템 복구관리에 입력된 자료 활용 점검

점검근거/자료

○ 2014 재해복구 추진지침

문 의 처

○ 복구총괄과 이광윤(02-2100-0772)

<table>
<tr><td>구 분</td><td>4. 기관역량</td><td>4-2.행 · 재정적 지원</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정책방향</td><td>배점</td><td>시도 5, 시군구 5</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4-2-4. 지자체가 생태계 복구,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 실적 (UN ISDR 캠페인 지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군구, 세종) 지자체가 생태계 복구,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 실적 (5점)
- 대상 : ① 생태하천(인공습지조성 포함) 조성 및 복원 ② 생태 공원 조성 및 복원 ③ 하천수(水) 정화를 위한 퇴적토 준설, 미생물, 유기물 분해 ④ 토종어류 방류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⑤ 생태교란 식물제거 사업 추진 ⑥ 생태계 보호 · 관리를 위한 환경단체 지원 등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4">사업비 투자 (3점)</td><td colspan="4">추진대상 종류 (2점)</td></tr>
<tr><td>10억
이상</td><td>5억～
10억미만</td><td>1억～
5억미만</td><td>1억
미만</td><td>4종
이상</td><td>3종</td><td>2종</td><td>1종
이하</td></tr>
<tr><td>배점</td><td>3</td><td>2</td><td>1</td><td>0.5</td><td>2</td><td>1.5</td><td>1</td><td>0.5</td></tr>
</table>
○ (시도) 관할 시군구 생태계 복구,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 독려한 실적 (5점)
관할 시·군·구 생태계 복구,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한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5점×5점</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생태계 복구, 보호, 관리를 위한 지원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투자비는 2014년도 투자한 금액이며, 미준공된 것은 불인정(단, 기성금 인정)
- 생태계를 위한 추진한 종류는 완료된 건만 인정(단, 기성금 인정)
- (시도) 관할 시군구 생태계 복구,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 독려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군구, 세종) 생태계 복구, 보호, 관리를 위한 지원 실적
<table>
<tr><td>연번</td><td>건명</td><td>사업비(억원)</td><td>공사기간</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r>
<tr><td>점수</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생태계 복구, 보호, 관리를 위한 추진한 사업 자료(전자문서)
- 사업은 준공서류 사본 등
○ (시도) 생태계 복구, 보호, 관리를 위한 지원 독려 실적
<table>
<tr><td>시군구별</td><td>점수</td><td>비 고</td></tr>
<tr><td>000시</td><td></td><td></td></tr>
<tr><td>000군</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r>
<tr><td>산식</td><td colspan="2">(관할 시·군·구 생태계 복구,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한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5점×5점</td></tr>
<tr><td>점수</td><td colspan="2"></td></tr>
</table>
-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채점 집계표 사본</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진단항목(8-2)</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재난관리총괄과 한진택(02-2100-0678)</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4.기관역량</td><td>4-2.행 · 재정적 지원</td><td>점검대상기관</td><td>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재난경감계획(예방)</td><td>구조적, 비구조적 대책</td><td>배점</td><td>시군구 5</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4-2-5.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군구)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 (5점)
- 산식 : (작성면적/침수면적)
<table><tr><td>구분</td><td>배점 (①)</td><td>작성비율 (②)</td><td>점수(채점)[①×②]</td></tr><tr><td>산식</td><td>5</td><td></td><td></td></tr></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침수지역은 2014년과 2015년에 침수된 면적임
※ 작성면적 : 2014년 작성완료, 2015년 작성의뢰 실적까지 인정
※ 침수면적은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면적 (참고 5)
- 침수된 지역이 없는 시군구는 결측값 5점 인정

※ 침수흔적도(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에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 관리
- 태풍·호우·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군구)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
<table><tr><td>침수면적</td><td>작성면적</td><td>작성율</td><td>점수</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작성율 = (작성면적/침수면적)
- 침수면적 및 침수흔적도 작성면적 자료</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자연대해대책법」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 활용)</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재난보험과 박범수(02-2100-0796)</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4.기관역량</td><td>4-2.행 · 재정적 지원</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기타)</td><td>재정집행절차</td><td>배점</td><td>시도 6, 시군구 6</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4-2-6. (사전분석점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 (6점)
<table>
<tr><td>구분</td><td>130% 이상
확보</td><td>115～130%
미만 확보</td><td>100～115%
미만 확보</td><td>100% 미만
확보</td></tr>
<tr><td>배점</td><td>6</td><td>4</td><td>2</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이자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안전처(시 · 도)에 제출하는 분기 보고자료(9월말 기준)로 점수 부여

※ 재난관리기급 적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table>
<tr><td>법정적립기준*</td><td>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td><td>확보액(②)</td><td>확보율
(②/①×100)</td><td>점수</td></tr>
<tr><td>백만원</td><td>백만원</td><td>백만원</td><td>%</td><td></td></tr>
</table>
- 기금운용계획 등 관련 자료
*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
- 2011년 : 백만원, 2012년 : 백만원, 2013년 : 백만원, 3년 평균 : 백만원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실적 반영(9월말 까지 실적)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
○「동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75조</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문정호(02-2100-0625)</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4.기관역량</td><td>4-3.교육훈련개발</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td><td>교육훈련</td><td>배점</td><td>시도 6, 시군구 6</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6점)
- 교육대상 : 지역주민, 재난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일반공무원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교육계획 수립 (3점)</td><td colspan="3">교육실적 (3점)</td></tr>
<tr><td>수립</td><td>수립중</td><td>미수립</td><td>배점 (①)</td><td>실적율
(②)</td><td>점수(채점)
[①×②]</td></tr>
<tr><td>점수</td><td>3</td><td>2</td><td>0</td><td>3</td><td></td><td></td></tr>
</table>
- 실적율 : (시행실적(건)/자체 교육계획(건))</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불인정
- 교육 구분(지역주민/ 재난관리책임자/ 일반공무원)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은 2점 부여</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 교육계획 수립 실적
<table>
<tr><td>연번</td><td>수립일자</td><td>건명</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대국민 및 공무원 재난 관련 자체교육계획 수립 공문(전자문서)
○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 실적
<table>
<tr><td>연번</td><td>시행일자</td><td>건명</td><td>참여인원</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건</td><td></td></tr>
<tr><td>산식</td><td colspan="3">(시행실적(건)/자체 교육계획(건))×3점 = 점</td></tr>
</table></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 실시)</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4.기관역량</td><td>4-3.교육훈련개발</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td><td>교육훈련</td><td>배점</td><td>시도 6, 시군구 6</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4-3-2.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6점)
- 교육대상 : 지역주민, 재난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일반공무원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프로그램 계획 수립 (3점)</td><td colspan="2">프로그램개발 개발 (3점)</td></tr>
<tr><td>계획 수립</td><td>계획 미수립</td><td>개발완료</td><td>개발중</td></tr>
<tr><td>점수</td><td>3.0</td><td>0</td><td>3.0</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 및 개발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프로그램이란 새로운 교육과정명, 교과목, 교육방식, 교육교재, 교육자재 등을 말함
- 4-3-1 지표 관련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말함
-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은 불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table>
<tr><td>연번</td><td>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일자)</td><td>교육프로그램명</td><td>개발내용</td><td>예산지원 내용</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r>
<tr><td>점수</td><td></td><td></td><td></td><td></td></tr>
</table>
- 재난관련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보고서(전자문서) 및 예산집행서류 사본, 교육프로그램 납품서 사본 등</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 실시)</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4.기관역량</td><td>4-4.혁신</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가 · 감점</td><td>가점</td><td>배점</td><td>시도 5</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4-4-1.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2014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5점)
<table>
<tr><td>구분</td><td>점검결과
기관장 결재 (2점)</td><td>점검결과
그룹별 공개 (1.5점)</td><td>점검결과
언론홍보 (1.5점)</td></tr>
<tr><td>점수</td><td>여 2, 부 0</td><td>여 1.5, 부 0</td><td>여 1.5, 부 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2014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시군구 및 자체) 전결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 결재를 득한 경우 인정
○ 2014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시군구 통보 시 공문내용(첨부물에 포함된 경우 불인정)에 그룹별(우수, 보통, 미흡기관)로 통보한 경우 인정
- 우수 · 미흡기관 각 25%, 보통기관 50% 선정하되, 우수 · 미흡기관 숫자는 동일하야야 하고, 소수점이하 절사
※ 공문을 비공개 및 선정비율이 맞지 않은 경우 불인정
○ 2014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그룹별(우수, 보통, 미흡기관) 순위가 포함된 언론홍보에 대하여 인정
- 방송, 일간신문 등은 인정되나, 시도 홈페이지 게시 불인정
○ 세종 · 제주특별자치도는 점검결과 공개 및 언론홍보 대상이 없어 결측값 3점 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실적
<table>
<tr><td colspan="2">기관장 결재</td><td colspan="2">그룹별 공개</td><td colspan="3">언론홍보</td><td rowspan="2">점수</td></tr>
<tr><td>일자</td><td>결재자</td><td>공문통보일자</td><td>공문에 그룹별 공개 여부</td><td>일자</td><td>보도매체</td><td>그룹공개여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점검결과 기관장 보고문서(전자문서), 시군구 통보공문(전자문서), 언론홍보 결과 자료 사본 등</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4.기관역량</td><td>4-4.혁신</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가 · 감점</td><td>가점</td><td>배점</td><td>시도 15, 시군구 11</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4-4-2. (사전분석점검)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정성적 점검)</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3점)
<table>
<tr><td>구분</td><td>국장/부기관장 결재</td><td>과장이하 결재</td><td>미수립</td></tr>
<tr><td>배점</td><td>3</td><td>1</td><td>0</td></tr>
</table>
○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8점)
<table>
<tr><td>구분</td><td>배점 (①)</td><td>개선율 (②)</td><td>점수(채점)[①×②]</td></tr>
<tr><td>배점</td><td>8</td><td></td><td></td></tr>
</table>
○ (시도) 시군구 추진사항 분기별 점검 · 독려(4점, 제주 · 세종제외)
<table>
<tr><td>구분</td><td>3회</td><td>2회</td><td>1회 이하</td><td>미실시</td></tr>
<tr><td>배점</td><td>4</td><td>3</td><td>2</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세종 · 제주특별자치도는 독려 시군구가 없어 결측값 4점 인정
- 미흡사항이 없는 지자체는 결측값 인정
- 시도에서 시군구 점검실시, 우수시군구 및 시도의 점수는 국민안전처 자체분석결과(우수시군구 증빙 서류 별도 제출)
○ 개선계획 수립은 결재단계에 따라 점수부여(과장이하 결재한 경우 불인정)
○ 시도에서 시군구 추진사항 분기별 점검 · 독려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점검</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미흡사항 개선 실적 반영(9월말 까지 실적)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수립 · 점검 실적
<table>
<tr><td colspan="2">개선계획수립</td><td rowspan="2">분기별 점검일</td><td colspan="3">점수</td></tr>
<tr><td>수립일자</td><td>결재자</td><td>계획수립</td><td>점검</td><td>소계</td></tr>
<tr><td></td><td></td><td>, ,</td><td></td><td></td><td></td></tr>
</table>
○ (시도, 시군구)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table>
<tr><td>미흡사항(건)</td><td>개선실적*(건)</td><td>개선율</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개선율 = [개선완료 실적(건)/미흡사항(건)]
*개선실적 : 2014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점검결과 미흡사항개선계획의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완료하고, ‘15 점검결과 중간배점 이상인 경우만 완료된 것으로 인정
- 2014년도 미흡사항 중 2015 지표에 미 반영된 미흡사항은 완료된 것 인정</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통보(재난관리총괄과-480, ‘1.12.30.)
○ 2014년도 시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계획 분기별 개선실적 제출 (재난관리총괄과-285, ‘15.1.16.)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4.기관역량</td><td>4-4. 혁신</td><td colspan="2">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유지관리(기타)</td><td>점검결과 환류</td><td>배점</td><td colspan="2">시도 6, 시군구 6</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5">4-4-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5">○ 대상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사업장

○ (시도,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6점)
<table>
<tr><td>구분</td><td>배점 (①)</td><td>개선율 (②)</td><td>점수(채점)[①×②]</td></tr>
<tr><td>산식</td><td>6</td><td></td><td></td></tr>
</table>
※ 개선율 = 개선실적(건수)/지적사항(건수)</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을 1회 실시한 경우에는 배점의 50% 점수 부여
- 산정된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개선대상이 없으므로 결측값 6점 인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경우 결측값 불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5">○ (시도,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table>
<tr><td>지적사항(건수)①</td><td>개선실적(건수)②</td><td>개선율
(②/①)</td><td>점수</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공문(전자문서)(전, 후 사진 등)</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5">○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동법 시행령」 제7조</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5">○ 기후변화대책과 진경혁(02-2100-0649)</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4. 기관역량</td><td>4-4. 혁신</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상황관리(대응)</td><td>상황전파</td><td>배점</td><td>시도 8, 시군구 8</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4-4-4.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손해로부터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실적 (UN ISDR 캠페인 지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군구, 세종)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손해로부터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실적 (8점)
- 대상 : ① 재해취약지역(저수지, 도로, 하천 등) 등 긴급점검 및 순찰 ② 재해취약지역 등 저지대 대피지시 ③ 댐 방류 확대요청 및 침수지역 배수지원 ④ 배수펌프장 점검 및 가동 ⑤ 위험수목, 간판, 전주, 건축물 등 조치
<table><tr><td>구분</td><td>4종 이상 조치</td><td>3종 조치</td><td>2종 조치</td><td>1종 이하 조치</td></tr><tr><td>배점</td><td>8</td><td>6</td><td>4</td><td>2</td></tr></table>○ (시도)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손해로부터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독려 실적 (8점)
(관할 시·군·구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손해로부터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독려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8점)×8점</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관할 시군구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 독려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에 따른 조치한 실적은 불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군구, 세종)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한 실적
<table><tr><td>연번</td><td>재해발생 일자</td><td>조치내용</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합계</td><td></td><td></td><td></td></tr><tr><td>점수</td><td></td><td>건</td><td></td></tr></table>-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손해로부터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한 실적 자료, 결과보고서 등(전자문서)
○ (시도)관할 시군구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독려 실적
<table><tr><td>시군별</td><td>점 수</td><td>비 고</td></tr><tr><td>000시</td><td></td><td></td></tr><tr><td>000군</td><td></td><td></td></tr><tr><td>합계</td><td></td><td></td></tr><tr><td>산식</td><td colspan="2">[(관할 시·군·구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손해로부터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독려 실적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8점)]×8점</td></tr><tr><td>점수</td><td colspan="2"></td></tr></table>-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채점 집계표 사본</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진단항목(4-3)</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재난관리총괄과 한진택(02-2100-0678)</td></tr>
</table>

가점 · 감점 지표별 점검기준

구 분	5.가 · 감점	5-1.가점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가 · 감점	가점	배점	시도 7, 시군구 7
세부지표	5-1-1. (사전분석점검) 재난 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 추진 실적 (정성적 지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 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으로 선정 시 가점 (5점) -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선정된 경우 1건당 1점(최대 5점) * 기관별 제출건수 : 5건 이하 ○ (시도, 시군구)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수범사례로 통보된 사항 중 기관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시책도입 실적 (2점) -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선정된 경우 1건당 1점(최대 2점) * 기관별 제출건수 : 2건 이하			
측정기준	○ 재난 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은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정성적인 점검으로 점수 부여(시도에서 시군구 점검 시 채점) - 지표에 반영된 사항, 민방위 관련, 전년도 추진한 사업 및 사례, 공사의 경우 미준공 된 경우는 불인정 - 국민안전처 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불인정(소하천, 하천 정비 등) -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시도에서 제출한 경우 불인정 -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성과가 없는 사례는 불인정 ○ 점검결과 통보된 수범사례에 대하여 기관실정에 따라 벤치마킹 실적은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에서 점수 결정(시도에서 시군구 점검 시 채점) - 표지판 설치, 회의, 교육, 홍보, 폭염관련, 적사장 전진배치, 면진테이블 설치 등 불인정 - 지표에 반영된 사항 및 해당기관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불인정 - 시도 및 우수시군구 수범사례 및 벤치마킹 실적 점수는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 시 결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재난 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수범사례 실적 연번 / 사례(시책)명 / 주요내용 및 추진성과 / 기대효과 / 점수 -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범 및 특수시책도 인정 - 수범 및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공문 사본(성과포함) ○ (시도, 시군구) 2014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벤치마킹 실적 연번 / 벤치마칭 대상기관 / 수범사례 건명 / 주요내용 / 추진성과 / 점수 - 벤치마킹 추진 공문 사본			
점검근거 /자료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			

구 분	5.가 · 감점	5-1.가점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가 · 감점	가점	배점	시도 10, 시군구 10
세부지표	5-1-2.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추진 실적 (캠페인 미승인 지자체 제외)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캠페인 운영 및 경감계획 수립, 진단 및 평가 실적 (3점)

구분	운영 및 경감계획 수립 (1.5점)	기관의 재해위험 진단 및 평가 (1.5점)
배점	수립 1.5, 수립중 1, 미수립 0	평가 1.5, 진단중 1, 미진단 0

○ (시도, 시군구) 캠페인 추진 예산반영, 워크숍(교육) 참석 실적 (3점)

구분	캠페인 예산반영 (1.5점)	워크숍 참석 (1.5점)
배점	확보 1.5, 미 확보 0	참석 1.5, 미참석 0

○ (시도, 시군구) 재해경감개선 추진 실적 (4점)

- 산식 : 경감실적(건)/경감대상(건)

구분	대상	실적	완료율(①)	배점(②)	점수(①×②)
산식				4	

측정기준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가입하여 추진한 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 운영 및 경감계획 수립, 기관의 재해위험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부여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안전도진단 결과는 불인정
- 캠페인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워크숍 참여('13.12, ' 14.3)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운영 및 경감계획에 따라 추진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완료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재해경감개선 추진 실적은 캠페인 운영 및 경감계획 수립 후 추진한 실적 인정

※ 캠페인에 미가입한 지자체는 점수 불인정

※ UN ISDR 캠페인
- (개념) '10년부터 시작, 도시스스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를 촉구하는 UN ISDR 운동
- (가입대상) 시도, 시군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캠페인 운영 및 경감계획 수립, 진단 및 평가 실적

캠페인 가입승인 (일자)	경감 계획 수립 (일자)	진단 및 평가 (기간)	예산 확보 (백만원)	워크숍 참석 (일자/장소)	점수				
					계획	평가	예산	워크숍	소계

-계획서, 진단평가결과서, 예산서 사본, 워크숍참석 공문사본

○ (시도, 시군구) 캠페인 경감계획 추진 실적

연번	건명	주요내용	기간	점수

- 경감사업 추진 결재서류(품의서류), 지출서 사본

점검근거/자료

○ 2015「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추진계획 통보(재난관리총괄과-670, 2015.2.5.)

문 의 처

○ 재난관리총괄과 한진택(02-2100-0678)

<table>
<tr><td>구 분</td><td>5. 가 · 감점</td><td>5-1.가점</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가 · 감점</td><td>가점</td><td>배점</td><td>시도 10, 시군구 10</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5-1-3. (사전분석점검) 분야별 재난관리실태 점검결과 우수기관 등 가점</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분야별 재난관리실태 점검결과 우수기관 가점 (10점)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최우수</td><td>우수</td><td>보통(장려)</td></tr>
<tr><td rowspan="6">배점</td><td>‘15 여름철 (2점)</td><td>2</td><td>1</td><td>0.5</td></tr>
<tr><td>‘14 겨울철 (2점)</td><td>2</td><td>1</td><td>0.5</td></tr>
<tr><td>소하천정비(2점)</td><td>2</td><td>1</td><td>0.5</td></tr>
<tr><td>수해복구사업(2점)</td><td>2</td><td>1</td><td>0.5</td></tr>
<tr><td>국가기반체계(2점)</td><td>2</td><td>1</td><td>0.5</td></tr>
<tr><td>매뉴얼정비실태(2점)</td><td>2</td><td>1</td><td>0.5</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국민안전처 주관 여름철 ·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결과 우수기관 순위에 따라 가점 점수 부여
- 시도에서 점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불인정
○ 점수는 최대 10점을 부여</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td></tr>
</table>

구 분	5. 가 · 감점	5-1.가점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가 · 감점	가점	배점	시도 13, 시군구 13
세부지표	**5-1-4. 재난관련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우수기관 가점 (신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관련 부서 신설 및 인사교류에 따른 가점(최대 13점)** - 재난관련 부서가 신설된 경우(5점) (※ 재난, 안전, 사회 등의 신설부서에 해당함) - 통합정원 증원 실적(5점) (※ 재난관련 부서의 정원의 인력 증원이 있을 경우) - 인사교류 실적 · (시도) 국장급 이상(건당 5점), 과장급(건당 3점) · (시군구) 과장급 이상 인사교류 실적(건당 3점)			
측정기준	○ 재난안전관리 조직 신설 및 정원 증원 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상반기에 조직신설 및 정원이 증원되었으나 점검일 현재 조직 및 정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점 처리 ○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최대 가점은 13점 부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조직신설·통합정원 증원실적은 관련조례 및 인사발령 문서 등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지자체간 인사교류 관련 문서			
점검근거 /자료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			

구 분	5.가 · 감점	5-2.감점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가 · 감점	감점	배점	시도 -12, 시군구 -12
세부지표	**5-2-1. (사전분석점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된 경우 감점**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 실종) 발생된 경우 감점 (최대 -12점)**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1명당 -3점)** - 특보기간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 실종) 발생 **(1명당 -1.5점)**			
측정기준	○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 인원수에 따라 감점 점수 부여 - (시도) 관할 시군구에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인원수에 따라 감점 부여 ○ 특보기간 중 기관 잘못으로 안전사고를 막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는 인원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최대 감점은 "-12점" 부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명피해 자료 인용, 사고발생 지역기준으로 감점 부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자연재난대응과) 자체 분석결과 - 실적 반영(9월말 까지 실적)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점검근거 /자료	○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3(2015.3.12.)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문 의 처	○ 자연재난대응과 신명수(02-2100-0719)			

<table>
<tr><td>구 분</td><td>5.가 · 감점</td><td>5-2.감점</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가 · 감점</td><td>감점</td><td>배점</td><td>시도 -5, 시군구 -5</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5-2-2. (사전분석점검) 특보 발표 기간 중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된 경우 감점</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특보 발표 기간 중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된 경우 감점 (-5점)
<table>
<tr><td>구분</td><td>2명 이상 발생</td><td>1명 발생</td></tr>
<tr><td>배점</td><td>-5</td><td>-3</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특보 발표 기간 중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인원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시도는 특보 발표 기관 중 관할 시군구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인원수에 따라 감점 부여
- 폭염특보 발표 지역 인명피해에 한함

○ 최대 감점은 “-5점” 부여</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자연재난대응과)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 2015 폭염대응 종합대책 통보 : 자연재난대응과-1848(2015.5.25)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자연재난대응과 박두진(02-2100-0720)</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2">5.가 · 감점</td><td colspan="2">5-2.감점</td></tr>
<tr><td>점검대상 기관</td><td colspan="2">시도, 시군구</td><td>배점</td><td>시도 -8, 시군구 -8</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5-2-3. (사전분석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7조 등에 따른 점검결과 재난관리의무를 위반한 지자체 및 업무태만 공무원이 적발된 경우감점(신규)</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 감찰 · 감사결과 기관 경고, 담당 공무원 징계요구 또는 지적(시정 · 개선)된 경우 감점 (-8점)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기관 경고</td><td colspan="4">징계 요구 건수</td><td colspan="5">지적(시정 · 개선) 건수</td></tr>
<tr><td>4이상</td><td>3</td><td>2</td><td>1</td><td>21이상</td><td>16~20</td><td>11~15</td><td>10 이하</td><td>5건 이하</td></tr>
<tr><td>배점</td><td>-8</td><td>-8</td><td>-6</td><td>-4</td><td>-2</td><td>-8</td><td>-6</td><td>-4</td><td>-2</td><td>0</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평가대상 연도에 실시한 안전감찰 및 감사 결과 지적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조치의무 위반 기관에 대한 경고 건수
- 재난응급조치 · 안전점검 · 재난상황관리 등 업무태만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징계 요구 건수

- 점검결과 지적(시정)된 건수

○ 최대 감점은 “-8점” 부여</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시군구) 국민안전처(안전감찰담당관실)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안전감찰담당관실 박양수(02-2100-0066)</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5.가 · 감점</td><td>5-2.감점</td><td>점검대상기관</td><td>시도, 시군구</td></tr>
<tr><td>재 난
관리기준</td><td>가 · 감점</td><td>감점</td><td>배점</td><td>시도 -2, 시군구 -2</td></tr>
<tr><td>세부지표</td><td colspan="4">5-2-4 (사전분석점검) 상황전파시스템(Safe-On) 훈련 메시지 반복 미수신 지자체가 재발방지대책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점</td></tr>
<tr><td>측정방법</td><td colspan="4">○ (시군구, 세종)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를 3회 이상 반복 미수신한 경우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부기관장이상 보고문서)을 국민안전처에 미제출(-2점)
<table>
<tr><td>구분</td><td>4회</td><td>3회</td><td>2회</td><td>1회</td></tr>
<tr><td>배점</td><td>-2</td><td>-1.5</td><td>-1</td><td>-0.5</td></tr>
</table>
○ (시도)관할 시군구 상황전파시스템 훈련메시지를 3회 이상 반복 미수신한 경우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부기관장이상 보고문서)을 시군구에서 국민안전처에 제출 독려 실적 (-2점)
<table>
<tr><td>관할 시·군·구 훈련 메시지 3회 이상 반복 미수신한 경우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미제출 점수의 합/관할 시·군·구 수/ -2점×-2점</td></tr>
</table></td></tr>
<tr><td>측정기준</td><td colspan="4">○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3회 이상 반복 미수신한 경우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시군구에서 국민안전처에 제출(시도는 관할시군구 독려)한 실적에 따라 감점 점수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시의 미제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부기관장이상 미결재한 경우 불인정</td></tr>
<tr><td>증빙자료</td><td colspan="4">○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시군구 훈련 메시지 3회 이상 반복 미수신한 경우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미제출 실적
○ (시군구, 세종)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반복 미수신 재발방지대책 미제출 실적
<table>
<tr><td colspan="2">훈련</td><td colspan="3">재발방지대책 제출</td></tr>
<tr><td>일시</td><td>3회 이상 반복 미수신 여부</td><td>일자</td><td>건명</td><td>근거</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미제출 횟수(계)</td><td></td><td></td><td></td><td></td></tr>
<tr><td>점수</td><td></td><td></td><td></td><td></td></tr>
</table>
- 월별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수신점검 결과 공문(국민안전처 전자문서), 3회 이상 미수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부단체장 보고문서) 국민안전처 제출공문(전자문서)
○ (시도) 재발방지대책 독려실적(세종제외)
<table>
<tr><td>시군별</td><td>점 수</td><td>비 고</td></tr>
<tr><td>000시</td><td></td><td></td></tr>
<tr><td>000군</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r>
<tr><td>산식</td><td colspan="2">[(관할 사·군·구 훈련메시지 3회 이상 반복 미수신한 경우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미제출 점수의 합/관할 사·군·구 수)/ -2점]×-2점</td></tr>
<tr><td>점수</td><td colspan="2"></td></tr>
</table></td></tr>
<tr><td>점검근거
/자료</td><td colspan="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동법 시행령」제23조</td></tr>
<tr><td>문 의 처</td><td colspan="4">○ 상황총괄담당관실 한호근(02-2100-0223)</td></tr>
</table>

구 분	5.가 · 감점	5-2감점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가 · 감점	감점	배점	시도 -5, 시군구 -5
세부지표	5-2-5. (사전분석점검) 재난관리 실태점검 추진일정 미준수 등 감점 (정성적 점검)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준비, 서류제출 등 감점 (최대 -5점)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관련 보고문서 제출기일 미준수 (1회 -1점, 2회 -2점, 3회 -3점) √ 재난관리 실태점검 준비 및 협조 미흡 지자체(-3점) √ (시도) 시군구에 대한 시도 점검결과와 중앙합동점검단 점검결과 차이가 ±10점(100점 만점) 이상이 경우(-3점) √ 재난관리 실태점검 증빙서류가 500p넘는 경우(-3점) √ 재난관리 실태 우수지자체 보조금 부실운영 지자체(-3점)			
측정기준	○ 재난관리 실태점검 준비, 서류제출 등에 따라 점수 부여 (정성적 점검) - 재난관리 실태점검 준비 및 협조가 미흡한 지자체 - 보조금 사업내용 및 경비배분 변경할 경우 국민안전처 사전 미승인, 회계연도 이월 및 집행부진 지자체 - 감점 결정은 중앙합동점검단 최종 검토회의시 결정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 지방자치단체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점검근거 /자료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 통보 : 재난관리총괄과-546('15.1.29)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			

구 분	5. 가 · 감점	5-2.감점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가 · 감점	감점	배점	시도 -8, 시군구 -8
세부지표	5-2-6. (사전분석점거)재난관련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미흡한 기관 감점 (신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재난관련 부서의 폐지에 따른 감점(-8점) - 재난관련 부서가 폐지된 경우(-4점) (※ 조직개편으로 통합된 경우는 폐지된 경우에 해당함) - 통합정원이 감축된 경우(-4점) (※ 재난관련 부서의 정원 및 인력 감축이 있을 경우)			
측정기준	○ 재난관련 부서폐지 및 통합정원이 감축 될 경우 감점 ○ 점수는 최대 -8점을 부여			
증빙자료	○ (시도, 시군구)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자체 분석결과			
점검근거 /자료	○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			